

한국 미술품의 해외 판매 관련
세금 제도 및 신고 절차 안내서

한국 미술품의 해외 판매 관련 세금 제도 및 신고 절차 안내서





한국 미술품의 해외 판매 관련
세금 제도 및 신고 절차
안내서



들어가며

국내 갤러리의 해외 진출은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 시장과 직접 만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그 경쟁력을 국제무대에서 입증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최근 한국 작가와 갤러리의 활약은 국제 아트페어와 현지 전시를 통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별 미술품에 대한 제도와 세금 체계, 통관절차 등은 여전히 복잡하고 상이하여 현장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국내 갤러리 관계자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행정·세무상의 어려움과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국가 및 권역별 아트페어 참가와 미술품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세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아트페어 참가 및 작품 판매 시 필요한 주요 절차와 세금 제도, 그리고 현장 경험에서 얻은 실무적 정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갤러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준비하는 미술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더 많은 한국 작가와 갤러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나아가 한국 미술이 국제 시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12월

I 장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위한 준비 과정	7
	들어가기: 해외 아트페어 참가 준비하기	9
II 장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위한 국가별 주요 법과 제도 이해하기	11
	1. 한국	13
	1) 국내 갤러리의 국내 미술품 반·출입 및 통관절차	15
	① 수출·수입 신고 의무	15
	② UNI-PASS(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신고 절차	15
	③ 한국 내 미술품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 서류	18
	④ 문화유산법 적용 여부 확인	18
	⑤ 갤러리가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국내 반입 후 재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19
	2) 국내 갤러리의 해외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19
	① 관세	19
	② 소득세	20
	③ 부가가치세	28
	④ 법인세	31
	⑤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31
	3) 해외 미술품 판매 절차 관련 유의사항	32
	① 해외에서 미술품 판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2
	②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34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35
	2. 미국	36
	1) 외국 갤러리의 미국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37
	① 납세자 식별번호(EIN/ITIN) 발급	37
	② 통관 신고 및 절차	38
	③ 관세 보증금(TIB) 납부	39
	④ 미국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40

2) 외국 갤러리의 미국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42
① 관세	42
② 부가가치세(VAT)	42
③ 판매세 또는 사용세	43
④ 기타 유관 세제: 연방 및 주(state)별 소득세 및 법인세, 자본이득세 등	44
⑤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46
3) 주(State)별 판매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와 절차	47
① 뉴욕주	49
② 플로리다주	51
③ 캘리포니아주	52
④ 일리노이주	54
4) 주(state)별 주 판매세 및 지역 판매세	55
① 뉴욕주	55
② 플로리다주	55
③ 캘리포니아주	55
④ 일리노이주	56
3. 프랑스	58
1) 외국 갤러리의 유럽연합(EU)/프랑스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59
① EORI 번호(경제 운영자 식별 등록 번호) 사전 등록 및 발급	59
② EU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60
③ 프랑스/EU 내 미술품 반입 절차 및 제도	62
2) 외국 갤러리의 프랑스/EU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63
① 관세	63
② 부가가치세	63
③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64
④ 자금세탁방지 규정(LCB-FT)	64
3) 부가가치세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	65
① 비EU 사업자의 부가가치세(VAT) 등록	65
② 세금 신고 및 납부	66
③ EU 납부 간소화 제도 One-Stop Shop (OSS)의 이용	66
④ 세무 대리인 지정 의무	67

4. 영국	68
1) 외국 갤러리의 영국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69
① EORI 번호(경제 운영자 식별 등록 번호) 사전 등록 및 확보	69
② 비영국 역내 과세대상자로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 사전 등록	70
③ 영국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71
2) 외국 갤러리의 영국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71
① 관세	71
② 부가가치세(VAT)	71
③ 자금세탁방지(AML) 규제(MLR2017)	75
④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75
5.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	79
1) 외국 갤러리의 아부다비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81
① UAE 수입 및 통관 신고	81
② 아부다비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82
③ 전시 허가증 발급	83
④ 상업 면허 또는 임시 영업 허가증 발급	83
⑤ 아부다비 미술품 반입 시, 특별 허가 제도 확인	85
2) 외국 갤러리의 아부다비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86
① 관세	86
② 부가가치세(VAT)	87
③ 법인세	88
④ 세금 신고 및 납부	89
6. 홍콩	91
1) 외국 갤러리의 홍콩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92
① 홍콩 내 통관	92
② 홍콩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서류	93
2) 외국 갤러리의 홍콩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94
① 관세 및 부가가치세	94
② 법인세	94

7. 일본	97
1) 외국 갤러리의 일본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98
① 일본 내 미술품 수입 통관: 특별 세관 구역	98
② 일본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98
2) 외국 갤러리의 일본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99
① 관세	99
② 소비세	99
③ 미술품 지속 거래 사업자의 등록 및 준수 요건	100
부록	103
해외 아트페어 준비 과정	105
참고문헌	109



I 장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위한 준비 과정

들어가기: 해외 아트페어 참가 준비하기

들어가기: 해외 아트페어 참가 준비하기

1) 사전 철저한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

각 국가의 미술품 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세율과 현지 수입 판매자의 등록 요건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므로 참여하고자 하는 아트페어의 통관과 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비교하여 갤러리의 작품 포트폴리오와 판매 전략에 가장 적합한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 미술품에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VAT 세율을 제공하는 시장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트페어에 출품하는 미술품이라고 해서 모두 관세법상 '미술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도 독일과 같이 미술품의 정의에 따라 VAT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판매하려는 작품의 유형이 해당 국가의 세법상 미술품 정의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 아트페어 주최 측의 대행/지원 및 정보 제공 요청

아트페어 참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첫 번째가 각 아트페어 참가 신청과 함께 해당 국가의 통관 및 세무 절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지원 또는 대행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요 아트페어는 외국 갤러리의 일시 수입을 위해 필요한 통관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한다. 최소한 아트페어 개최 국가에서 외국 갤러리에게 요구하는 필수 절차와 서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협의하여 진행한다.

3) 통관 및 세무 절차를 위한 현지 파트너의 이용

각국의 복잡한 관세 및 세금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세사 및 세무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프랑스와 일본처럼 세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 국가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 및 법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

력,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갤러리가 해외 단기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경우 운송 대행사(포워더)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일반적으로 미술품 전문 운송 회사들은 현지 파트너를 통해 통관 및 세무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운송 대리인의 각 해당 국가의 현지 파트너 유무와 해당 국가에 대한 관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선정한다.

4) 철저한 서류 준비와 사전 계획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운송 서류, 수입 신고서,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문화재 규정과 관련된 작품의 출처 증명 서류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통관 지연이나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판매자 등록, 필요한 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 등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트페어 개최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5) 부가가치세 (VAT) 사전 등록 이행

영국, 프랑스 등 비거주 사업자에게 판매 규모와 관계없이 VAT 등록을 의무화하는 국가에서는 아트페어 참가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VAT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시 판매 대금 지급 지연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6) 국내 세금 신고 의무 준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세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 등을 국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조세조약 및 고정사업장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적 신고(protective return)를 고려하여 이중과세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7) 유럽연합(EU) 국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

프랑스를 포함한 EU 국가들은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있으며, 미국도 현재 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해당 규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 갤러리도 마찬가지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 미술품의 해외 판매 관련 세금 제도 및 신고 절차 안내서

II 장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위한 국가별 주요 법과 제도 이해하기

1. 한국
2. 미국
3. 프랑스
4. 영국
5.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
6. 홍콩
7. 일본

1. 한국

□ 간단히 보기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계획하는 국내 갤러리는 통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며, 미술품 판매 후 부과될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한국에서 미술품을 수출입 할 때에는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유니패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미술품은 HS Code 9701~9706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대부분 0%가 적용된다.

미술품 판매 시에는 판매 주체 및 거래 조건(판매 가격, 판매 방식 등)에 따라 소득세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창작자가 직접 미술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갤러리가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등 세무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Step 1

해외 아트페어 참가 전 체크리스트

- **수출·수입 신고 의무:** 국내 갤러리는 미술품의 수출입 신고를 위해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유니패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각 미술품에 해당하는 HS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수출입 신고에 요구되는 다양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적용 여부 확인:** 전통 회화나 불교회화 등 문화재적 성격이 있을 수 있는 미술품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해당 작품이 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작품은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내 문화재감정관실에서 ‘

비문화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확인:** 갤러리가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Step 2

아트페어 기간 및 사후 판매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 **소득세법상 검토:** 창작자, 소장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화랑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창작자 또는 소장자의 경우, 구매자는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사업상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는 창작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화랑인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판매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 의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창작자가 직접 미술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갤러리가 미술품 판매를 중개할 경우,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법인세 납부 여부:** 화랑이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됨을 고려해야 한다.
- **기타 검토 사항:** 판매 계약 체결 시에는 준거법, 관할법원 등 필수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등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들을 검토해야 한다.

□ 상세히 이해하기

1) 국내 갤러리의 국내 미술품 반·출입 및 통관절차

① 수출·수입 신고 의무

관세법상 '수출'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제2호, 제5호 가목). 국내 미술품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국내 미술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수출'로 정의된다. 따라서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 갤러리가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외국에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출 및 수입 신고의 대상이 된다.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¹⁾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또한 수출·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수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2항). 신고 방법으로는 관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유니패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있다. 한편, 미술품 수출입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25년 9월에는 국내 한 미술품 경매회사의 대표가 수출입 과정에서 미술품의 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조선비즈, 2025.9.10.).

② UNI-PASS(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신고 절차

먼저 유니패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한 후 관할 세관으로부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유니패스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안내'란을 참고하면 된다.²⁾

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을 말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2)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최종접속일: 2025.10.2.)

수출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출종류’란에 ‘FedEx/UPS/TNT/DHL 등의 특송업체나 국제 운송 주선업체(포워더)를 통해 수출하면 A(일반 수출)를 입력하고, ‘EMS, 국제소포, 등기소형포장물 등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로 수출하면 P(우편 수출)를 입력하면 된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할 때 신고하는 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관세법 시행령 제 246조 제3항 제1호). 수출입 신고를 심사한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를 수리하면 공적 증명서인 수출입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니패스 시스템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 HS 코드 분류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는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 코드)를 입력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국제 공통인 HS 코드 6자리를 기반으로 뒤 4자리(한국 관세 목적에 맞는 국내 세분 코드)를 추가하여 10자리까지 확장해 사용할 수 있다. HS 코드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HS 코드를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FTA 통합 플랫폼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HS 코드 조회가 가능하다.³⁾ 특히 ‘원작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관세 면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이미지라도 제작 방식이나 작품 형태, 용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코드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미술품에 대한 수출입신고서를 하기 전에 스스로 HS 코드 등 품목 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신청서와 대상물품의 견본 등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86조,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표 II-1〉 미술품 관련 HS 코드 분류표

HS 코드 호 분류	품명 (HS 해설서 참고)
HS 9701 예시) · HSK9701.21-1000: 회화 · HSK 9701.21-2000: 데생 · HSK 9701.21-3000: 파스텔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 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다만, 모자이크 작품으로서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3) FTA 통합 플랫폼 사이트(<https://okfta.kita.net/hsCode?mnSn=207>)에서 HS 코드 조회 가능.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HS 코드 속건표 및 국내 관세율을 확인 가능.

HS 9702	오리지널 동판화· 목판화· 석판화 * HS 해설서는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다.
HS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 * HS 해설서는 ‘제9703호에는 비록 이들 작품이 예술가가 디자인하였거나 창작하였다 하더라도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장식용 조각의 경우에는 제 9703호 분류에서 제외되며, 어떤 재료라도 가능하지만, 대량 생산품은 제외된다.
HS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감정서, 진품 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할 수 있다.)

미술품의 경우 HS 코드 제97류(예술품·수집품·골동품)가 주로 적용되지만, 해설서에 기재된 의미가 모호하여 사진, 뉴미디어 작품 등의 면세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등 과세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52-53). 특히 사진의 경우 제97류 예술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상업용 인쇄물로 간주될 경우, HS 4911.91(서화·디자인·사진) 등으로 분류되고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작가가 직접 인쇄하고, 작가의 서명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30점 이하로 한정 제작된 사진 작품은 인쇄화로서 HS 9702 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한국관세신문, 2025.7.17.). 최근에는 뉴미디어 작품의 제97류 예술품 해당 여부가 많이 문제 되고 있는데, 관세청은 백남준 작가의 TV 작품의 품목분류가 문제된 사안에서 오리지널 조각이 분류되는 제970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HS 9703호 해설서에는 조각에 대해 “복제품의 총수가 12개를 넘는 것은 드물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2개까지는 에디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관세청은 작가 도널드 저드의 12개 한정 에디션 중 3번째 복제품을 오리지널 조각 및 조상으로 분류한 바 있고(감정47281-589, 1994.7.25.), 특정 예술가의 뉴미디어 아트 총 8개 에디션 중 5번째 작품 수입 시 이를 9703호로 분류하며 ‘대량생산에 따른 복제품 또는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품목분류 1과-2134, 2013.8.29.).

③ 한국 내 미술품 수출입 통관을 위한 기본 서류

한국에서 미술품을 수입하거나 해외로 반출할 때 하는 수출입 신고에는 다음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작품의 성격에 따라 일부 서류는 추가될 수 있다.

- **수출입 신고서(또는 ATA 까르네)⁴⁾**: 통관 신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서
- **상업 송장(Pro-Forma Invoice)**: 실제 거래 전, 견적·신용장 발급용으로 작성하는 형식적인 송장으로, 작품명, 작가,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상세히 명시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각 포장물의 내용물이 명시된 문서
- **운송 관련 증빙서류**: 운송 자체를 증명하는 항공 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등으로, 운송경로, 운송인, 수하인, 작품 수량 및 운송 조건 등이 기재된다. 상업 송장과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수하인의 주소·성명 등이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국내 화랑은 해외 아트페어 참가를 위한 미술품 반출 시 대부분 미술품 전문 운송사를 이용하고 있다. 운송사를 확정하여 운송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계약 목적, 금액, 운송 기한, 보험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필요시) 진품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 작품의 제작 연도, 작품명, 작가명 등 기본적인 작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진품 증명서 및 미술품의 기원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경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④ 문화유산법 적용 여부 확인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문화유산법 제39조 제1항).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문화유산법 제60조 제1항).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문화유산법 시행령 제36조).

따라서 전통 회화 또는 불교회화 등의 미술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고자 한다면, 반출하기 전에 해당 미술품이 문화재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국제공항

4)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로 일시적 반입 허가 증서나 문서를 뜻한다. 전시품, 상업 견본(상품 샘플), 전문 장비, 방송/촬영 장비, 스포츠 장비 등 다양한 물품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모품·소비품, 사용 중 완전히 변화가 생기는 물품 등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웹사이트,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최종 접속일: 2025.10.2.).

이나 국제여객터미널의 문화재감정관실에서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감정하여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비문화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전시 목적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국내 반입 후 재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ATA 까르네의 활용**: ATA 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는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는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나 세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제 통관 증서이다. 판매가 아닌 전시 목적의 물품⁵⁾이 그 대상이고, 재수출(재반출)해야 한다. ATA 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출 조건부로 면세 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수출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으므로, 부여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재수출면세 제도의 활용**: 재수출면세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관세법 제97조 제1항). 이는 국제적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 기간 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동안 재수출면세가 적용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호).

2) 국내 갤러리의 해외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① 관세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술품의 수출 과정에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미술품에 대해서는 **국내 관세율 0%**가 적용된다. 다만, 관세가 면제되는 미술품에 해당하는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 주체, 생산 목적과 성격, 대량생산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5) 전시품, 상업 견본(상품 샘플), 전문 장비, 방송/촬영 장비, 스포츠 장비 등 다양한 물품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모품·소비품, 사용 중 완전히 변화가 생기는 물품 등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소득세

▶ 미술품 거래 주체별 소득세 과세 방법

〈표 II-2〉 미술품 판매 관련 소득세 과세 구분

구분	관련 조항	과세 대상 소득	과세표준	과세 방법
창작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기타소득 (일시적·간헐적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 - 필요경비 (양도가액의 60%는 필요경비 인정, 실제 지출된 비용이 더 클 경우 실제 지출 비용으로 인정)	창작자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고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 원천징수 ⁶⁾ 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됨.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 -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랑 등 미술품 구입자가 전업 작가로부터 판매용 미술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작가의 수입금액 3.3% 상당액을 원천징수⁷⁾하여 납부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6~42% 누진세율 적용 화랑이 법인의 경우 소득세 대신 법인세 납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중개자 (화랑 등)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사업소득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판매가 -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품 구입자가 기타소득금액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개인 소장자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기타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판매가 - 필요경비 (양도가액 1억 원 이하는 90%, 1억 원 초과분은 80% 필요경비 인정) *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때에는 1억 원 초과분도 90% 필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품 구입자가 기타소득금액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출처: 허원제(2022). “미술품에 대한 취득세 과세 타당성 연구.” 27면. 저자 일부 재작성.

6)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공제)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7)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미술품의 판매는 소득세법상 ‘매도를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미술품 양도에 대한 과세는 미술품 양도소득의 양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미술품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제정하다 보니 위 〈표 II-2〉와 같은 독특하고도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품의 거래 주체별, 양도소득별로 과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분류 기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 창작자가 판매 주체인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1. 전업 작가가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사업성 있음)

전업 미술 작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여 판매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을 경우를 살펴본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판매가)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된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여기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물감과 붓 등의 재료비, 작업실 임차료, 미술품 운반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창작자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2. 비전업 작가가 일시적으로 미술품을 창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사업성 없음)

반면, 비전업 작가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이 아닌 일회적 창작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으로 분류된다. 비전업 작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2%(소득세 20%⁸⁾ + 지방소득세 2%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역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판매가)에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의 60%⁹⁾중 큰 금액’을 제한 금액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 2호). 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

8)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9) 2019년 1월 1일부터 필요경비율이 70%에서 60%로 변경되었다.

여 창작자에게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위와 같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사업 형태’, ‘계속성·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전업 작가로서 지속적으로 작품을 창작·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비전업 작가가 간헐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그동안 다른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전문화가이고, 2004년 2008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미술품을 판매하고 135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양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0서0813, 2010. 6. 23.).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

미술품을 창작하는 개인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나. 중개자(화랑, 경매업체 등)가 판매 주체인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1. 화랑이 미술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화랑이 미술품 판매로 인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화랑이나 경매업체는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화랑의 소득금액은 전업 작가

가 미술품을 반복적으로 창작,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화랑이나 경매업체 등 미술품 구입자가 작가로부터 판매용 미술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작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3.3%(소득세 3%¹⁰⁾ + 지방소득세 0.3%¹¹⁾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화랑은 사업소득자인 작가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기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¹²⁾ 발급 의무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2019.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참고)으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술품 구매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승인 번호,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한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고,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1조의 9 제2항 제3호).

나-2. 화랑이 미술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 미술품 판매액의 일정 수수료를 적용한 판매 수수료가 판매상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이때 화랑은 중개 및 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탁·중개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아니지만, 판매 수수료에 대한 미술품 구매자의 발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를 내야 한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

10)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11) 지방세법 제103조의 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야 한다.

12) 소비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개인 소장자가 판매 주체인 경우

<p>소득세법</p> <p>제21조(사업소득)</p> <p>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12.29.></p> <p>소득세법 시행령</p> <p>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p> <p>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p> <p>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p> <p>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p> <p>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p> <p>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

▶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종전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자라도 계속·반복적인 미술품 거래로 소득을 얻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됨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의 경우 2021년부터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관되게 서화·골동품 판매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되면서, 기존에 문제되었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간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위험이 사라지게 되었다(법무법인(유) 화우, 2023:87-88). 다만, 여기서 서화·골동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조각, 도자기, 철기, 공예품 등은 과세되지 않으며, 100년 미만의 골동품도 과세대상이 아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23-24).

따라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판매가의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그런데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미술품을 양수한 자(미술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나, 해당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양도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삼일회계법인, 2025:2-3).

▶ 과세 범위 및 방법

개인 소장자가 서화·골동품을 양도할 때 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양도 시점에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국내 작고 작가 및 외국 작가의 6,000만 원 이상의 작품이 판매될 경우에 한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미술품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자산과 달리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을 수입 금액으로 본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인정하고 있어, 실질 과세 부담은 크지 않다. 즉, 양도가액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양도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90%, 1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물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의 법정 필요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비과세 및 비용공제 규정은 소득세법상 개인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인이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을 양도하거나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바목, 사목).

<p>사례 1. 국내 작고 작가의 작품을 개인 소장자인 A가 3,0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3년 후 컬렉터인 B에게 6,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p> <p>→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60,000,000원) - 필요경비(54,000,000원:양도가액의 90%) = 6,000,000원</p> <p>원천징수세액 = 6,000,000원(기타소득금액) x 22%(지방소득세 포함) = 1,320,000원</p> <p>→ B가 소득세 132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p>
<p>사례 2. 해외원작자의 작품을 개인 소장자인 A가 1억 2,0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7년 후, 외국인 B에게 1억 8,000만 원에 판매한 경우</p> <p>→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180,000,000원) - 필요경비(154,000,000원 : 100,000,000원 x 90% + (180,000,000원 - 100,000,000원) x 80%) = 26,000,000원</p> <p>원천징수세액 = 26,000,000원(기타소득금액) x 22%(지방소득세 포함) = 5,720,000원</p> <p>→ 외국인 B가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 받은 미술품 양도자인 A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572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p>
<p>사례 3. 개인 소장자인 A가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1점을 2억 원에 판매하였고, 외국 작가의 작품 1점을 5,000만원에 판매한 경우</p> <p>→ 양도 시점에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점당 6,000만 원 미만을 거래한 경우에 각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p>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앞서 살펴본 대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화랑 또는 프리랜서 작가 등의 국내 거주자가 미술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개인 거주자가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 하며, 모든 거주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10억 초과 구간은 45%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머지 구간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 ~ 최대 42%까지만 적용된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 간편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6월 말 ~ 7월 말 환급된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제금액

이 소득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 세액에 인적 공제,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등이 있기 때문에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5월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 의무**

사업용 계좌 신고·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세무상 의무로서,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와 특정 전문직 사업자로 구분되는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도매 및 소매업자,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화랑(도매 및 소매업자)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은 골동품을 제외한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제16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미술품의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작가의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또한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는 수입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반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에 따라 ‘제작된 지 100년을 초과한 도자기류, 악기류, 기타’에 해당하는 골동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 법원은 예술창작품 면세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예술창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술창작품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이 부분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과세관청에 사전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건물 준공을 위해 필요한 예술창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가 해당 미술품 설치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된다고 오인한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미술품의 제작 및 설치

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¹³⁾ 화랑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작가로부터 미술품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예술창작품의 직접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화랑의 수입 금액이 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¹⁴⁾ 따라서 화랑에서는 면세되는 미술품 판매를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예를 들어, 화랑 공간의 대관으로 인한 임대료 수입), 미술품의 위탁·중개에 의한 판매 수수료, 골동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단순 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기 위해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고, 현금영수증 또는 단순 계산서는 면세사업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골동품을 제외한 미술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화랑을 포함한 판매자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자는 미술품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단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다만, 미술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화랑의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곽혜영 외, 2019:210-211, 221). 또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 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방식

간단히 말하면 “매출세액(공급가액×10%)- 매입세액(과세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등)+ 가산세- 공제세액”이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13) 1심 인천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133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43128, 3심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파기환송).

14) 화랑에서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면세 여부(부가22601-1767, 2009. 8. 25.);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2047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④ 법인세

화랑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익금은 작품 판매수익 등과 같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하며, 손금은 세금과 작품 매입비 등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을 뜻한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실제 지출 사실(세금계산서·영수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2023년 귀속 연도부터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법인세율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21%,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24%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법인세법 제55조).

참고로,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사무실과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즉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⑤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미술품의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거주지국(Residence State)과 구매자의 소재지국(Source State)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제 거래나 해외 투자로 인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동시에 과세되거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조세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은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어느 국가에 배분할 것인지를 규율하며 일반적으로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세조약¹⁵⁾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개별 조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은 2025년 현재 10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발효 중이며, 대표적인 협정국에는

15) 조세조약이란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 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 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을 기초로 구성되며, 각국 간의 세부 합의에 따라 조정된다. 예를 들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3조(자본소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미술품이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아트마켓을 통한 미술품 거래에서는 여러 국적의 주체가 얽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다른 국가에서도 과세 대상이 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나라가 모두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조세조약이 작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갤러리가 프랑스 아트마켓에서 미술품을 판매하여 1,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프랑스가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한국에서 해당 소득 신고 시 그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를 국세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거주자 증명서를 외국 납세지국(예: 프랑스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조약상 한도로 인하받는 것을 시도하거나,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일정 한도 하에서 공제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및 감면근거 첨부),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3) 해외 미술품 판매 절차 관련 유의사항

① 해외에서 미술품 판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국제 미술품 거래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법제와 상관습, 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에 비해 법적·실무적 리스크가 훨씬 높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거법: 국내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민법 등 국내 법률이 적용되지만, 국제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Governing Law)’이 전체 계약 관계를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 준거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지 불분명해져 절차적 혼선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판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화랑이 프랑스 컬렉터와 미술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국 법리가 적용되는지, 프랑스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작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나 손해배상 범위, 위약금의 유효성, 지체 이자율 등도 적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와 같이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외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려는 경우, 사전에 현지 법률자문을 받아 해당 법률의 규정과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할법원: 관할 합의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재판을 진행할지를 미리 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외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판매한 뒤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① 판매자의 소재지 국가 법원, ② 구매자의 소재지 국가 법원, ③ 아트페어 개최지 법원 등이 모두 관할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소송 절차, 재판 결과, 비용, 판결 집행 가능성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미리 특정 국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국제 재판관할 합의 또는 특정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합의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관할 합의 역시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의 협상력이 약한 경우에는 제3의 중립국 또는 중재기관에서의 중재를 제안하는 것도 실무상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필수 협의 및 명시 사항: 국제 미술품 거래는 단순한 매매계약을 넘어, 운송·보험·관세·결제 등 복합적인 요소가 수반된다. 따라서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국제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판매 가격 및 지급 조건: 지급 통화 단위(USD, EUR 등), 송금 방식(SWIFT, PayPal 등), 지급 기한, 환율 변동 책임 등
- 작품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시점

- 운송 및 보험: 운송비 부담 주체, 작품 훼손·분실 시 책임, 보험가입자 지정 등
- 세금 및 통관: 수출입 관세, 부가세(VAT), 현지 예술품 판매세 등 납세의무자 명시
- 계약 해제·손해배상: 위약금 산정 기준, 계약 불이행 시 통지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②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법상 미술품 거래는 거래의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외국환거래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거주자’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 ‘비거주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 간 미술품 거래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비거주자와의 거래, 해외 미술품 취득, 대금의 해외 송금 등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외국인(비거주자)과의 미술품 거래의 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미술품을 거래하고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은행 등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건당 미화 1만 달러(약 1,420만 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화랑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미술품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을 경우 건당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거주자가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의 휴대 반출 시:** 거주자가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기 위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자본거래 신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미술품의 단순 매매는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대차, 증권 발행·취득, 파생상품거래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미술품 조각투자, NFT 등 새로운 형태의 미술품 거래구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서울옥션블루(주) 등이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김흥기, 2024:54-55).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국세조세조정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납세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역외탈세 방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다. 미술품 거래 자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미술품 거래 대금을 보관하거나 거래하기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국세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 화랑이 해외에서 미술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해외 은행 계좌로 수령하거나, 미술품 구입을 위해 해외에 개설한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입할 정보:**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ex.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등)
- **위반 시 제재 사항:**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2. 미국

□ 간단히 보기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¹⁶⁾을 통해 연방 차원의 통관절차를 따르되, 참여하는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주(state)와 도시에 따라 세제와 절차가 다르므로 아트페어 참여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Step 1

해외 아트페어 참가 전 체크리스트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미화 2,500달러를 기준으로 간이 통관과 정식 통관을 구분하며 전문 미술작품은 일반적으로 이 한도를 넘는 가치이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따른다. 미국 통합관세율표(HTS) 97장(Chapter 97)에 따라 원작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무관세이다. 그러나 엄격한 서류 요건이 있으며 관세 면제 품목이라도 2,500달러를 초과하는 상업적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보증금(customs bond) 의무 등이 부과된다. 특히 고가 작품을 취급하거나 여러 저가 작품을 단일 선적으로 통합하여 운송하는 갤러리는 관세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가격 책정 및 물류에 반영해야 한다. 통합관세율표 제97장에 따른 원작 미술품이 아닌 경우 관세가 부과되므로 미술품의 관세율표상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 연방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적절한 납세자 식별번호(EIN 또는 ITIN)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는 없으나 각 주정부 및 지방 정부별로 별도의 판매세나 사용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위하여 아트페어 또는 미술품 판매지의 주, 카운티, 시별로 각 판매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판매를 위하여 사전에 판매자 등록 또는 임시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6)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 <https://www.cbp.gov/> 참조. (최종접속일: 2025년 10월 2일).

Step 2

아트페어 기간 및 사후 판매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 각 주(state)마다 각각 독자적인 판매세 (주에 따라 사용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미술품을 포함한 유형 개인 재산에 판매세를 부과하지만, 세율, 지역별 차이, 그리고 판매자 등록을 위한 경제적 연계(economic nexus)¹⁷⁾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 연방 소득세 의무는 한국 갤러리의 활동이 “미국 내 사업 또는 거래(U.S. trade or business)”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으로 이어진다. 이 결정은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국 내 운영의 성격과 규칙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는 경제적 연계(economic nexus)에 따라 자체 법인세 및 사업세를 부과하여 주 및 지방 소득세 고려 사항이 추가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단기 아트페어 부스는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으로 간주되지 않아 미국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미술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이 성립되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state)별로 매출액이나 횟수의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상세히 이해하기

1) 외국 갤러리의 미국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¹⁸⁾

① 납세자 식별번호(EIN/ITIN) 발급¹⁹⁾

17) 기업이 미국의 어느 주에서 물리적 존재(매장, 사무실, 직원, 창고 등)가 없어도, 해당 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또는 거래 횟수를 기록하면 그 주와 “충분한 경제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간주하여, 그로 인해 판매세 징수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

18) Op. cit.,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 참조.

19) 미국 IRS 웹사이트-고용주 식별번호 발급,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get-an-employer-identification-number>, (최종접속일: 2025년 10월 2일).

미국에서 세금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면 식별번호(ID)가 필수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적절한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은행 계좌 개설, 계약 체결, 세금 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사업 활동에 필수적이다.

납세자 식별번호가 없더라도 일시적인 판매행위 자체는 가능하고, 판매세 신고의 경우 주별로 사업자번호(Business Tax ID)를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방 세무번호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갤러리가 잠시 판매만 하고 철수하는 경우 필수는 아니나, 향후 미국 내 세무이슈가 생길 것을 대비해 EIN을 받아 두는 것이 권장된다. 세금 환급이나 미국 내 계좌 개설, 현지 세무대리인 지정 등의 상황에서 고용주 식별번호(EIN)가 요구될 수 있으며, 특히 연방 세금(법인세 등) 신고 대상이거나 미국 은행 업무 등을 위해서는 연방 세금 식별번호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표 II-3〉 고용주 식별번호(EIN)²⁰⁾와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²¹⁾

구분	고용주 식별번호(EIN)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법인 (예: 법인형 갤러리) IRS가 사업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9자리 번호 급여 지급, 사업체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 특정 유형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만 EIN을 취득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개인 (예: 개인 사업자형 갤러리)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IRS가 세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9자리 번호로 사회 보장 번호(SSN)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 및 거주 외국인에게 발급
신청 방법	미 국세청(IRS)에 양식 SS-4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출 또는 미국 내 대리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미 국세청(IRS)에 양식 W-7과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 사본 제출

② 통관 신고 및 절차²²⁾

미술품을 미국에 반입할 때 미술품의 가치에 따라 간이 또는 정식 통관절차로 나뉜다.²³⁾ 미술

20) Ibid.

21) 미국 IRS 웹사이트-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https://www.irs.gov/tin/taxpayer-identification-numbers-tin>, (최종접속일: 2025.10.2.).

22)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3550-079A Ultimate Consignee at Time of Entry Release, 2013.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3550_079a_3.pdf

23) Op. cit., 미국 연방규정집 웹사이트-간이 통관 대상 물품.

작품의 신고 가치가 \$2,500 이하²⁴⁾이면 세관양식 CBP Form 7523 (Entry and Manifest of Merchandise Free of Duty)²⁵⁾를 작성하여 비공식 통관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통관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미술품의 판매 가격 또는 시장 가치가 \$2,500를 초과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로 간주되어 통관 대리인(관세사, 운송업체 등)가 전자 통관(ACE Manifest)²⁷⁾을 통해 반입신고 요약서 CBP Form 7501 (Entry Summary)²⁸⁾을 제출해야 한다.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전문 미술작품은 일반적으로 이 한도를 넘는 가치이므로 정식 통관절차를 따른다.

화물 도착 전 (항공은 4시간 전, 해상은 24시간 전) 화물의 상세정보(품목, 수량, 가격), 수입업체 정보, 관세 대상인 경우, 관세 계산 내역, HS 코드 및 관세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관 시 세관 신고서(CBP Declaration)²⁹⁾에 작품의 상세 정보를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작품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할 경우 적발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100년 이상 된 골동품(antique)이나 미술품이라면 나이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1919년 이전 제작된 문화재의 경우 원산국 정부의 수출 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다.

③ 관세 보증금(TIB) 납부

미국 관세법상 소액 물품(de minimis) 규정에 따라 \$800 이하의 물품은 면세 통관되지만³⁰⁾, 2,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상업적 수입품에 대해 관세 보증금(Temporary Importation under

24) 미국 관세법 제1321조 19 U.S.C. 1321 (De Minimis) 규정 참고. 라틴어로 “최소한의” 또는 “사소한”이라는 뜻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참고: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최소과세면제 규정, <https://www.cbp.gov/trade/trade-enforcement/tftea/section-321-programs>, (최종접속일: 2025.10.2).

25)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 and Manifest of Merchandise Free of Duty, Carrier’s Certificate and Release, 2025.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2024-05/cbp_form_7523.pdf

26) 미국연방규정집 제19편 제143조 19 CFR 143 (Informal Entry) 참고. 소액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에 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의미한다. 참고: 미국연방규정집 웹사이트-간이 통관 대상 물품,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43/subpart-C/section-143.21>, (최종접속일: 2025.10.2).

27) 자동화상업환경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CE)은 미국 세관의 전자 통관 시스템으로 모든 수입 관련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24/7 전자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시스템 검토 완료 후 통관을 승인하고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관세 및 수입세를 납부하고 화물의 반출을 허가 한다.

28)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 Summary, 2025.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2025-07/CBP_Form_7501.pdf

29)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Form 3461 Instructions, 2016.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6-Jun/CBP%203461%20Instructions_0.pdf

30) Op. cit.,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최소과세면제 규정,

Bond, TIB)을 예치해야 한다. 전문 미술작품은 일반적으로 이 한도를 넘는 가치이므로 정식 신고가 필요하다. 수입 품목이 무관세인 미술품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있는 관세사를 통해 신청하며,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명, 세금 ID (고용주 식별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 사업 유형, 주소, 수입품 설명 및 예상 가치와 같은 정보를 요구한다.

관세 보증금에는 단일 거래 보증금(Single Transaction Bond)과 연속 보증금(Continuous Bond)³¹⁾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는 단일 세관 거래에 사용한 단일 거래 보증금을 내게 된다. 단일 거래 보증금은 단일 세관 거래에 사용하며 그 보증금액은 수입품의 가치, 즉 미술품의 판매 가격 또는 시장 가치와 해당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는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나 세금을 면제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제 통관 증서 ATA 까르네(ATA Carnet)³²⁾ 없이 임시 반입하려면 세관 양식 CF-3461/7501 제출과 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수료 지불을 보장하는 CBP에 대한 재정적 보증이며, 2,500달러 초과 시 무관세 품목이어도 해당한다.

④ 미국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아트페어가 열리는 도시나 주에 상관없이 미국의 수입(반입) 및 통관절차는 통일되어 있으며 운송업체나 통관 대리인이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및 판매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각 포장의 상세 내용 제공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상품이 제작된 국가 확인. 한미무역협정(KORUS FTA)을 통해 관세 면제를 받거나 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미술작품 자체가 관세 면제 대상일 경우 필수는 아니나, 한국산 미술품의 경우 한미 FTA의 혜택으로 관세율이 낮거나

31) 이는 12개월 동안 여러 선적을 계획하거나 다양한 입국항을 사용하는 수입업자를 위해 설계된 자동 갱신 보증금을 말한다. 연속 보증금의 최소 보장액은 50,000달러이며, 예상 연간 관세 및 수수료의 최소 10%를 충당하도록 계산된다.

32) 판매가 아닌 전시 목적의 반입을 위한 서류로 반입 작품에 대하여 재수출(재반출)해야 하므로, ATA 까르네를 통해 미술품을 반입한 후,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미술품은 임시 수출 상태에서 영구 수출 상태로 전환하여 세무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0%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 특혜를 받는 것이 좋다.

- **수출 신고서(Export Declaration):** 미화 \$2500 이상 작품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신고
- **세관 양식 CF-3461/7501 제출과 보증금 예치**
- **연령 증명(골동품에 필수):** 100년 이상 골동품의 경우 HTS 9706에 따라 무관세 지위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 **항공 운송장(Air Waybill, AWB)³³⁾ 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³⁴⁾:** 운송수단 및 경로 정보. 송하인과 운송인 간의 계약으로 상품 수령증 및 소유권 문서 역할을 한다. 운송 방식에 따라 항공 운송장 또는 선하증권 등이 필요하다. 실무상으로 해상운송(B/L)은 결제·소유권 이전 등 거래상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으나, 항공운송(AWB)은 소유권 이전이 필요 없고 절차가 단순해 신속한 인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제 무역에서 AWB는 실제 물품 인도만 보장하며, B/L은 결제·소유권 이전 및 금융거래에 활용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트페어 참여 시에는 항공 운송을 이용한다.

〈표 II -4〉 항공 운송장(AWB)과 선하증권(B/L)의 주요 차이

구분	항공 운송장 (Air Waybill, AWB)	선하 증권 (Bill of Lading, B/L)
운송 수단	항공	해상(주), 일부 육상/복합
소유권 이전	불가 (소유권 증명 필요 없음, 비유가증권)	가능 (소유권 증명 필요, 유가증권, 양도 가능)
유통성	비유통성 (Non-negotiable)	유통성 (Negotiable)
운송장 발행 시점	화물 인수 시 (수취식)	본선 적재 후 (선적식)
인도 방식	지정된 수하인만 인수 가능	B/L 소지자 또는 양수인이 인수 가능
법적 역할	운송계약 및 수취증명, 운송증권, 운임 계산 및 통관용 서류	운송계약 및 수취증명, 소유권증명(권리증권)

33) 비유가증권이며, 단순히 화물 운송 계약의 체결·수취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정된 수하인(Consignee)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 유통이 불가하다. 비교적 간단하며 발행과 인도 절차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주로 항공 운송, 신속 인도에 중점을 둔 화물에 사용한다.

34) 유가증권으로, 법적으로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 원본 소지자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양도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며, 거래 및 금융(신용장 결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거래관 계와 금융 상황에 따라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 등으로 구분한다.

2) 외국 갤러리의 미국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① 관세³⁵⁾

미국 내에서 회화, 드로잉, 파스텔, 콜라주, 장식용 판, 판화, 인쇄물, 석판화, 조각품 등 원작자가 손으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칭하는 원작 미술품(original artwork)³⁶⁾은 일반적으로 미국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대량 복제품(multiple)이나 기계적 복제가 가미된 미술품(예: 대량 인쇄된 판화, 기념품 등), 수작업으로 채색되거나 장식된 제조품(예: 수작업으로 직조된 벽지, 휴일 기념품, 도자기류)은 원작 미술품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공산품으로 간주되어 약 5~6% 내외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작품에 포함된 액자가 일반적이지 않고 고가의 별도 공예품으로 판단되면, 액자 부분에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단, 한국산 미술작품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이 낮거나 0%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 특혜를 받도록 한다.

100년 이상 된 골동품이나 미술품은 관세가 면제되지만, 100년 미만의 미술품 중 일부는 원산지에 따라 6.6%에서 최대 25%까지 관세가 책정된 사례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관세 보증금을 내고 반입한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은 작품에 대하여 재수출(재반출) 확인을 받고 실제로 재반출하여야 관세 및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VAT)

미국은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VAT)가 없다.

35) 미국 관세법 홈페이지-제19편 Title 19: 통합관세율표(HTS) 제 97장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https://hts.usitc.gov/>, (최종접속일: 2025.10.2).

36) Ibid. 통합관세율표(HTSUS) 제 97장 주요 품목
1. 9701 - 회화, 소묘, 파스텔화 (Paintings, drawings, pastels)
2. 9702 - 원본 판화, 인쇄물, 석판화 (Original engravings, prints, lithographs)
3. 9703 - 조각품 및 조각상 (Sculptures and statuary)
4. 9704 - 우표, 인지, 소인 (Postage stamps, revenue stamps, postmarks)
5. 9705 - 수집품 (Collections and collectors' pieces)
6. 9706 - 골동품 (Antiques of over 100 years)

③ 판매세 또는 사용세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 대신 주(state)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판매세(Sales Tax)와 사용세(Use Tax)가 부과된다. 미술작품도 일반 소비재와 동일하게 판매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판매된 작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경우 부과된다. 외국 갤러리가 해당 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판매(매출 또는 거래 건수 등)를 하는 경우, 해당 주에 판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갤러리 판매든 아트페어에서의 현장 판매이든 판매 방식에 차이가 없다.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징수 및 납부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다. 즉 작품 구매자는 작품 가격과 함께 판매세를 지불하고, 판매자는 이를 대신 징수하여 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 갤러리(외국 판매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판매 행위를 하면 해당 주에 판매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판매 세율과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주(State) 및 지방 정부마다 상이하므로 갤러리가 참여하는 아트페어 개최지의 해당 주(State) 및 지방 정부의 규정을 따른다. 따라서 한국 갤러리가 미국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주와 지방 정부의 판매세 및 사용세 등 세법을 확인하고 징수 및 납부 절차에 대해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뉴욕이나 플로리다 등에서는 판매자가 세금을 대납하거나 면세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격 할인 홍보 시에도 “세금 포함” 등의 문구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가. 구매자가 다른 주 또는 해외로 배송받는 경우

구매자가 아트페어 현장에서 작품을 인도받지 않고 다른 주나 해외로 배송받는 경우, 배송지 기준으로 판매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작품을 구매하고 즉시 한국으로 배송한다면 뉴욕 판매세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작품이 미국 내 다른 주로 배송되면 그 주의 세율에 따라 사용세(Use Tax)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뉴욕의 경우 미술작품을 뉴욕 밖의 주소지로 직접 운송하면 뉴욕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나. 구매자가 재판매 목적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 현장에서 구매자가 재판매 목적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아트 딜러나 갤러리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구매자가 유효한 재판매증명서(Resale Certificate)를 제공하면 판매세를 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해당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④ 기타 유관 세제: 연방 및 주(state)별 소득세 및 법인세, 자본이득세 등

현지에서 작품을 판매한 후에는 미국 내 세금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정부 판매세 신고 외에 연방 차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가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 갤러리가 미국에 법인 설립 없이 일시 입국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foreign corporation)” 또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이때 발생한 판매 이익에 대해 미국 연방 소득세 과세 여부는 미국 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면제될 수 있다.

가. 미국 연방 법인세 및 연방 소득세와 고정사업장 요건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이 미국에서 영리 활동을 통해 미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연결된 소득(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을 얻으면 미국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상업적 이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사업이 상대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 거주자(개인/법인)가 미국 내 고정사업장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은 미국에서 법인세/소득세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트페어와 같은 일시적인 판매 부스 참여는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세 조약상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이 그 사업소득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한국 갤러리는 해당 판매 이익에 대해 미국 연방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조세조약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만약 IRS(미국 국세청)가 해당 활동을 미국 내 사업에 종사(engaged in trade or business)한 것으로 보고자 할 경우, 예방 차원에서 미국 세무신고서에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주장을 보호적으로 기재(protective return)하는 것이 권장된다.

나. 고정사업장 요건

미국 내 반복적·지속적인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미국에 상설 사무소나 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미국 법인세(연방 법인세율 21% 등)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한두 번 판매하고 그치는 경우와 달리, 미국 내에서 반복적으로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판매를 이어간다면 미국 측에서 사업자로 간주하는 정도가 높아진다. 세법상으로는

첫 거래부터도 사업 목적이 있다면 이미 사업자이지만, 반복성과 지속성은 과세당국이 상시적인 사업 고정점(poised business presence)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아트페어에 참가한다면, 뉴욕주는 해당 갤러리를 뉴욕주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보고 지속적인 세무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방 세법상으로도, 5년 중 3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영리활동을 했다면 IRS가 미국 내 사업활동 영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고정사업장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반복 거래가 누적되면 결국 미국에 지점(branch)이나 사무소가 있는 것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갤러리가 향후 미국 시장에 반복 진출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각 거래별로 철저히 조세조약 적용 요건을 충족시켜 미국 과세를 피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반복 거래 시 해당 주에서 사업자 등록(business license) 요건이 생길 수도 있다(예: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는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영업하면 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함). 또한, 판매 이익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국 내 원천징수 세목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술품 판매는 일반적인 상품 판매로서 별도 원천징수는 없으나, 만약 경매 등의 형식으로 미국 법인이 대금 지급을 하는 경우 양도대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다. 주 소득세 및 주 법인세

판매세와 소득세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세금으로, 주 소득세와 주 법인세가 있다. 연방 과세와 별개로 각 주정부가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등은 법인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예: 일리노이주 법인세 9.5%, 뉴욕주 약 6.5%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 정부는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방과세 전제가 있을 때 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에 의해 연방과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주정부가 과세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뉴욕시와 같이 별도 상공세(unincorporated business tax)가 존재하는 지역(뉴욕시는 외국법인에는 적용 제외)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라.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미국 내 자산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작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일반 사업소득세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미술품은 미 연방법상 수집

품(collectible)으로 간주되어 개인 투자자가 팔 경우 연방 양도소득세율 28%가 적용되지만, 사업 목적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통상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 측면에서는, 작품 구매 후 개인이 되파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추가 과세는 없다. 다만 구매자가 미국 내 다른 주로 작품을 반출하면 사용세(use tax) 신고가 요구될 수 있고, 한국으로 반출하면 미국 내 추가 세금은 없다. **아트페어에 일시적으로 참가하는 비거주자는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업 또는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결된 소득(ECD)으로 간주되어 연방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아트페어 참가는 단기간일지라도 미국에서 판매 활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ECI로 분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아트페어에 부스를 빌려 단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도 주(state)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⑤ 자금세탁방지(AML) 규제³⁷⁾

외국 갤러리가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은 한국이나 유럽처럼 포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국 갤러리가 미국 내에서 사업(아트페어 판매)을 수행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이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³⁸⁾

- **\$10,000 초과 현금 거래 보고:** 단일 거래 또는 연관된 거래의 총액이 \$10,000(약 1,3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를 받을 경우, 해당 갤러리는 미국 국세청(IRS)에 Form 8300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³⁹⁾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현금의 범위:** 미국 내외를 막론하고 실제 통화(지폐와 동전), 여행자 수표, 은행환(Cashier's Check), 우편환(Money Order) 또는 \$10,000 이하의 금융기관발행 수표/환을 포함한다. 단, 개인 수표, 전신 송금, 신용카드 결제는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규제 도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시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020년 자금

37) 미국 IRS 웹사이트-Form 8300 및 1만 달러 초과 현금 지급 신고,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8300-and-reporting-cash-payments-of-over-10000>, (최종접속일: 2025.10.2).

38) Ibid.

39) US IRS,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2023. <https://www.irs.gov/pub/irs-pdf/f8300.pdf>

세탁방지법(AMLA 2020)⁴⁰⁾에 따라 골동품(Antiquities) 딜러는 이미 AML 규제 대상이 되었으며, 미술품 시장 전반을 은행 비밀 보호법(BSA)⁴¹⁾의 규제 대상인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에 포함하려는 미술시장 투명성 법안(Art Market Integrity Act)⁴²⁾이 상원에서 발의되는 등 지속적으로 미술품 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갤러리를 포함한 미국 내 아트마켓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AML 프로그램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 CDD):** 구매자의 신원 확인 및 최종 실소유주(Ultimate Beneficial Owner, UBO) 확인 의무
- **AML 프로그램 구축:** AML 책임자(Compliance Officer) 지정, 내부 정책 및 절차 수립, 직원 교육, 독립적인 감사
-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s, SARs):**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금융 범죄단속국(FinCEN)에 보고할 의무
- **거래 기록 보관:** \$10,000 이상의 거래에 대한 상세 기록 보관.

규제와 무관하게 외국 갤러리가 미국 아트페어에 참가할 경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대상(Sanctioned Parties) 목록에 거래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고액 거래 시(예: \$10,000 또는 \$25,000 초과) 구매자의 신원(ID) 및 자금 출처(Source of Funds)에 대한 최소한의 실사를 진행해야 하고, 특히 익명으로 복잡한 법인 구조를 통해 구매하려는 고객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실사를 적용해야 할 것이 권장된다.

3) 주(State)별 판매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와 절차

미국의 각 주(state)는 미술작품 포함 과세 대상 상품을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비거주 외국의 갤러리 또는 임시 참여자라 하더라도 현지 세법을 똑같이 적용한다. 외국 갤러리도 미국 각

40) 미국 의회 웹사이트-2020년 자금세탁방지법(AML) 이행과 그 후,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255>, (최종접속일: 2025.10.2).

41) 미국 통화감독국 웹사이트-은행 비밀 보호법(BSA), <https://www.occ.treas.gov/topics/supervision-and-examination/bsa/index-bsa.html>, (최종접속일: 2025.10.2).

42) 미국 의회 웹사이트- 미술 시장 투명성 법안,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2400/text>, (최종접속일: 2025.10.2).

주에서 아트페어 등 임시 행사에 참가할 경우, 반드시 해당주의 판매자 등록 및 판매세 징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실상 내국인 및 현지 갤러리와 동일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 판매자 사전 등록 의무

가. 임시 판매 허가

외국 갤러리가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판매를 하려면 각 주 세무국에 판매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마다 명칭은 다르나 등록 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판매세 허가증(Sales Tax Permit) 또는 판매세 인증서(Certificate of Authority) 등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행사 종료 후 해당 주에서 더 이상 판매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자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주에 따라 아트페어 참가 등 임시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허가(Temporary Permit)를 신청하며, 이 경우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행사 종료 후 자동 만료된다.

대부분의 주는 행사 최소 20일~90일 전 판매자의 등록(임시허가 또는 정식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판매자 등록 시 사업체명(갤러리명), 대표자, 현지 연락처, 행사 일정 및 장소, 외국 사업자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 판매 시 현지 세율(주, 카운티, 시 포함)로 판매세를 징수하며, 행사 종료 후 주어진 기한(보통 행사 종료 익월 말까지) 내 해당 주 세무국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판매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판매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및 향후 참가 제한될 수 있다. 행사(아트페어) 주최 측이 전체 또는 일부 판매자 세금 징수 및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개별 갤러리의 등록 및 신고 책임이 있다. 현지 주별 규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행사 참가 전, 행사 주최자 안내 및 주 세무국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뉴욕주,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4개 주 모두 임시 판매자와 외국 갤러리도 사전에 판매세 납부를 위한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주에서 판매세 허가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표 II-5〉 아트페어 일시적 참가 외국 갤러리의 판매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주(State)별 의무

주(State)	임시 판매자/외국 갤러리 사전 등록 의무	비고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 판매자/외국 갤러리도 반드시 정식 판매자 등록 및 판매자 면허(Certificate of Authority) 발급받아야 함 20일 전 신청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비거주 구분 없음 임시 판매 허가 제도 없음 사업 중단 시 사업 종료 20일 내 최종 판매세 신고서 제출 및 판매자 면허 반납
캘리포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일 미만 임시 판매의 경우 임시 판매 허가(Temporary Seller's Permit) 등록 및 발급 필요. 등록 후 행사 종료 시점까지 매출세액 집계 및 신고와 납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사업자 동일 임시 판매 허가 제도 있음 사업 중단 시 CDTFA에 신고
플로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갤러리 포함 모든 판매자가 정식 등록. Form DR-1 등으로 등록 후 행사 기간 내 판매세 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 판매 허가 제도 없음 사업 중단 시 DOR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일리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외국인 포함 행사별 IDOR 등록, 행사장 내 신고 및 납부 필요. 간혹 주최자가 일괄 신고 대신 참여자별 등록 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판매장소별 구체적 허가 제도 사업 중단 시 세무국 포털에서 계정 정보 갱신
기타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주가 임시 판매자/외국 갤러리도 임시 판매 면허 등록 및 발급, 행사 종료 후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화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 허가 제도 주별 예외 있음

① 뉴욕주⁴³⁾

판매세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판매자⁴⁴⁾에게 판매자 권한 증명서(Sales Tax Vendor Certificate of Authority) 발급을 요구하며, 일시적인 행사 참여자도 예외가 없이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43) 미국 뉴욕주 웹사이트-비즈니스 익스프레스, <https://www.businessexpress.ny.gov/>, (최종접속일: 2025.10.2).
 44) 뉴욕주에서 판매를 계획하는 사업체는 뉴욕주 세금 및 재정부(DTF)에 등록하여 판매세(Certificate of Authority)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사업체가 뉴욕에 물리적 존재(예: 본사, 상점, 사무실)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매를 시작하기 전 의무에 해당한다. 뉴욕주에 물리적 존재가 없는 사업체도 특정 경제적 연계(economic nexus)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뉴욕주 내 유형 재산 판매가 연간 3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년 내 뉴욕주 내에서 100건 이상의 유형 재산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 법인의 경우, 뉴욕주 국무부에 "사업 수행 권한"을 신청하여 권한 신청서(Application for Authority)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과세 대상 상품(미술품) 또는 서비스를 뉴욕주 내에서 판매하거나, 물리적 또는 경제적 연계(nexus)⁴⁵⁾가 있는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뉴욕주 판매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영업 시작 최소 20일 전까지 판매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 및 신고 누락 시 벌금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되므로, 항상 정확하게 절차 준수 필요하다. 사업장 이전, 폐업, 대표 변경 등 사업정보 변동 시 반드시 세무국에 즉시 통지. 현장 판매점, 임시부스 운영 시 지점별 별도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다.

〈표 II-6〉 뉴욕주 판매자 등록 및 판매세 신고 절차

절차	내용	비고
계정 생성 및 서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w York Business Express 포털⁴⁶⁾에 들어가 NY.gov 사업자 계정⁴⁷⁾ 생성 DTF-17 서식에 기반한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및 허가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판매 시작하기 최소 20일 전에 제출 Form DTF-17.1 (Business Contact 및 Responsible Person Questionnaire) 사업자명, 실주소/우편주소, 업종(NAICS 코드), 사업 형태(개인·법인 등), 설립일 및 뉴욕주 내 영업(또는 경제적 연계성), 시작일, 각 소유자(대표, 파트너)의 신상 정보, 사업 유형, 시작일, EIN(연방 고용주 식별번호), 연락처·주소·은행계좌 정보 등 기재 심사 후 보통 5영업일 이내 판매 허가서(Certificate of Authority) 원본이 사업장 주소로 우편 배송됨. 	발급된 판매 허가서는 반드시 사업장 또는 행사 부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함.

45) “경제적 연계(economic nexus)”란 기업이 미국의 어느 주에서 물리적 존재(매장, 사무실, 직원, 창고 등)가 없어도, 해당 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 또는 거래 횟수를 기록하면 그 주와 “충분한 경제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간주하여, 그로 인해 판매세 징수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별 기준을 초과하면 판매세 허가 등록 및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각 주 법률에 따라 기준, 적용 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주에서 연간 매출이 \$100,000을 넘거나 200회 이상의 거래가 있다면 경제적 Nexus가 성립되어, 판매세를 해당 주 고객에게 징수·납부해야 한다. 이 기준(매출액 또는 거래 횟수)은 주별로 다르며,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연 매출 \$500,000, 뉴욕은 \$100,000 혹은 거래 200건 이상 등이 적용된다.

46) Op. cit., 미국 뉴욕주 웹사이트-비즈니스 익스프레스

47) 개인 계정이 있어도 사업용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최종 판매세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을 중단할 때에는 사업 종료 20일 이내에 최종 판매세 신고서(Final Return)를 제출하고 Certificate of Authority를 반납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분기별 신고주기로 배정되며,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온라인 세금 보고 및 납부 (예: 1~3월 분기 매출은 4월 20일 마감으로 신고) 	매출 없어도 무실적 신고 의무: 행사에 불참했다 해도 무실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② 플로리다주

플로리다 내에서 판매, 임대, 리스, 또는 과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는 플로리다주 세무국(Department of Revenue, DOR)⁴⁸⁾에서 판매자 등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임시 판매 장소(Temporary Sales Locations)별로 개별 인증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비치 시 벌금 및 불이익이 발생한다. 플로리다주는 판매세 규정(Discretionary Sales Surtax, 임시 판매 인증서 등)이 카운티별로 상이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기준 상세 확인 필요하다. 플로리다주 판매자 등록(판매세 인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으며, 미사용 1년이 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표 II-7〉 플로리다주 판매자 등록 및 판매세 신고 절차

절차	내용	비고
계정 생성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로리다 세무국 웹사이트⁴⁹⁾에서 Florida Business Tax Application을 통해 전자 등록. Florida Form DR-1을 작성 	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5의 수수료가 부과됨
서류 제출 및 허가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체명, 실제 주소 및 연락처,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FEIN) 또는 개인 사회보장번호(SSN), 사업주 및 주요 임원의 신상 정보(주소, 연락처 등), 사업 개시일, 사업 내용 설명, 은행 계좌 정보(전자 신고/납부용), 해당 사업장 수 및 위치 등 기재 	

48) 플로리다주 세무국 웹사이트, <https://floridarevenue.com/Pages/default.aspx>, (최종접속일: 2025.10.2).

49) Ibid.

계정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계정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판매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플로리다 DOR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함 • 온라인 플로리다 세무국 포털에서 “Request a Change of Business Name, Address, and/or Account Status” (계정 상태 변경 요청) 메뉴를 통해 마지막 신고와 세금 납부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며, 계정 비활성화/폐쇄 전 모든 미납세금 정산이 필수 • 임시 중단(휴업) 및 영구 폐쇄 중 해당 사유를 선택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함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규모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신고 주기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소규모 판매자는 분기별로 신고를 진행 •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을 통해 세금 납부 •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월 20일(다음 달 20일)이 일반적. 특히 임시 판매 장소 운영 시, 판매지별로 신고 및 세금 관리가 필요 	매출 없어도 무실적 신고 의무

③ 캘리포니아주⁵⁰⁾

캘리포니아주에서 재화(미술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에 판매자 등록(일명 Seller’s Permit, Sales Tax Permit)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캘리포니아 내에 물리적 사업장(매장, 창고 등)이 있는 판매업자, 캘리포니아 거주자 대상 과세 대상 상품·서비스 판매(오프라인, 온라인 포함), 지점·임시부스 등 주거래처가 캘리포니아가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 내 연간(전년도 또는 당해) 매출 총액 \$500,000 이상 시, 무조건 판매자 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의무 발생) 성립 시 모두 해당된다. 3회 이상 판매 또는 연 12개월 내 \$1,000 이상 매출 시 판매자 등록 및 판매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1회에 90일 미만 단기 행사(아트페어) 판매자는 임시 판매자 허가증(Temporary Seller’s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⁵¹⁾ 캘리포니아의 임시 판매허가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

50) 캘리포니아주 세무국 웹사이트, <https://cdtfa.ca.gov/>, (최종접속일: 2025.10.2).

51) 외국 사업체(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설립된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거래"하는 경우 "외국 법인"으로 간주되어 외국 등록을 거쳐야 한다(일반적으로 물리적 존재, 직원 또는 주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 그러나 외국 법인 등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을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치를 설정하지 않고 가끔 방문하는 것, 갤러리 자체가 주에 물리적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독립 계약자를 사용하여 갤러리를 대신하여 판매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떨하지만, 정식 판매허가증의 경우 계속 유효하므로 사용을 중단할 때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또는 무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또는 이자 발생한다. 임시/추가 지점도 임시 허가증을 발급받아 판매 장소별로 비치해야 한다. 지역·특수 세금(구·카운티 할증 등)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며 사기 허위신고, 고의적 미납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표 II -8〉 캘리포니아주 판매자 등록 및 판매세 신고 절차

절차	내용	비고
계정 생성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리포니아주 세무국(CDTFA)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현장 등록 	
서류 제출 및 허가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정보(상호, 실제 주소, 연락처, 사업자 형태(개인/법인/파트너십/LLC 등)),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FEIN), 주정부 고용주 번호(SEIN, 해당시), 임원·소유자 이름/주소/번호, 운전면허증·SSN 등, 예상 월별 판매액, 발행 상품/서비스 정보, 사업 개시(또는 경제적 연계(Nexus) 성립)일, 은행정보(계좌, 거래은행명 등), 공급사 및 회계담당자 정보, 개인 참고인, 등록비는 무료(단, 미납 대비 예치금 요구 가능) 	
계정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계정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판매세 신고 및 납부 완료 후 계정 폐쇄 진행해야 함. •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총매출액 및 과세/면세 내역, 징수한 총판매세 금액, 공급사, 고객(특히 재판매 인증서 소지) 목록, 신고 기간별 상세 내역 등 	계정(판매자 등록) 변경·폐쇄, 사업장 이전, 사업 양도, 폐업 등 변동 시 반드시 CDTFA에 신고 및 판매자 계정 상태 변경 신청이 필요함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판매자는 행사 종료 후 그달의 말일까지 일괄 신고/납부 • 정식 판매 허가증을 가진 상시 판매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월간 또는 분기 신고 일정을 따름 - 고매출(월평균 세액 \$17,000 이상)은 월별, 기타는 분기 또는 연별로 배정됨. 마감일은 각 주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영업일(월별·분기별 등) 	매출 없어도 무실적 신고 의무

④ 일리노이주⁵²⁾

일리노이 내에서 과세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물리적 사업장(매장, 창고 등), 경제적 연계(1년간 \$100,000 이상의 판매 또는 거래 200건 이상 발생) 등으로 매출세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체가 등록 대상이다.

일회성 행사라도 판매를 하면 모두 정식 판매자로 간주되어 주 세무국(IDOR)에 등록하고, 모든 판매장소의 판매 허가증(Permit)을 발급받아 비치해야 한다. 판매허가증은 각 사업장마다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하며, 소홀할 경우 불이익·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가 필수다. 각 시·군(Local) 판매세 역시 별도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며, 착오 신고 시 불이익 우려. 신고·납부 주기는 매출·세액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무국에서 주기 변경을 통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정에서 계정 폐쇄 처리가 가능하다.

〈표 II-9〉 일리노이주 판매자 등록 및 판매세 신고 절차

절차	내용	비고
계정 생성 및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리노이 세무국(IDOR) 공식 포털⁵³⁾에서 'Register a New Business (Form REG-1)'를 통해 전자 등록 	등록 시 사업장(매장, 창고, 임시 판매 장소 등). 위치별로 정보 기재가 필요함. 등록비는 무료
필요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명, 실주소, 연락처 등 일반 정보, 사업자 형태(개인·법인 등), 설립일·인증번호(EIN), 소유주·주요 임원의 신상 정보, 사업활동 및 판매 품목/서비스 설명, 예상 세액 등, 각 판매지(오프라인/온라인/저장소) 정보 	
계정 휴업 또는 폐업 신고, 계정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변경, 폐업, 계정 변동 시 신속하게 주 세무국 포털에서 계정 정보 갱신이 필수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리노이 세무국은 등록 후 월별, 분기별, 연별로 신고 주기를 할당 (월평균 세액 \$200 초과: 월별 신고, 월평균 세액 \$50~\$200: 분기별 신고, 월평균 세액 \$50 미만: 연간 신고) 	매월 또는 분기/연도 종료 후 익월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의무

52) 일리노이주 세무국 웹사이트, <https://mytax.illinois.gov>, (최종접속일: 2025.10.2).

53) Ibid.

4) 주(state)별 주 판매세 및 지역 판매세

각 주는 기본 주 판매세(state tax)에 더해 지역 판매세(local tax)를 부과하며, 이를 합하여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총 세율이 결정된다. 미국 뉴욕주,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등 4개 주의 판매 세율과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뉴욕주⁵⁴⁾

주세 4%에 더해 뉴욕시 등 지방자치단체별 추가세(뉴욕시의 경우 4.5%) 및 대중교통지역세 0.375%가 붙어 뉴욕 시내 총 8.8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미술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지정된 도시의 통근 교통 지구(MCTD)⁵⁵⁾ 내에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0.375%의 MCTD 판매 및 사용세가 적용된다. 세금의 경제적 부담은 구매자에게 있지만, 적절한 징수 및 납부의 법적 및 재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갤러리에 있다.

② 플로리다주⁵⁶⁾

주세 6%이며, 카운티에 따라 0.51.5%의 추가세(surtax)가 있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6~7.5% 수준이다.

③ 캘리포니아주⁵⁷⁾

주세 7.25%(캘리포니아는 판매세와 별도로 일부를 지방분으로 포함하여 최저 세율이 7.25%)이며, 도시·카운티별로 합산 세율이 올라 로스앤젤레스시 약 9.5% 등 지역에 따라 7.2510%대의 세율이 적용된다. 총 적용가능한 판매 세율은 구매자가 미술품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장소 또는

54) 뉴욕주 재무부 웹사이트-판매세 및 사용세, <https://www.nyc.gov/site/finance/business/business-nys-sales-tax.page>, (최종접속일: 2025.10.2).

55) 메트로폴리탄 통근 교통 지구(MCTD) 카운티(더치스, 나소, 오렌지, 푸트남, 록랜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및 뉴욕시를 포함한다.)

56) 플로리다주 세무국 웹사이트-판매세 및 사용세, https://floridarevenue.com/taxes/taxesfees/Pages/sales_tax.aspx, (최종접속일: 2025.10.2).

57) 캘리포니아주 세무국 웹사이트-판매세 및 사용세, <https://cdtfa.ca.gov/lawguides/vol1/sutr/sales-and-use-tax-regulations-art4-all.html>, (최종접속일: 2025.10.2).

미술품이 최종적으로 배송되는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판매자가 일반 운송업체 또는 계약 운송업체, 관세사 또는 운송 대리인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외부로 구매자에게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미술품을 배송하는 경우, 판매자는 캘리포니아 판매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④ 일리노이주⁵⁸⁾

주세 6.25%에 카운티/시세가 붙는다. 시카고 시내에는 약 10.25% (일리노이 주 6.25% + 쿡카운티 1.75% + 시카고시 1.25% + 대중교통세 등)로 높다. 작품 판매 시에는 판매 장소나 인도 장소 기준으로 해당 지역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행사 개최 도시의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표 II-10〉 주별 판매세

주(state)	세율	비고	참고
뉴욕주	뉴욕시 총 세율 8.875% (주세 4% + 시세 4.5% + MCTD 0.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러리에 징수/납부 책임이 있음. • 주 외 배송 시 면세 규정이 있음. • 단, 운송 주체(common carrier vs. private carrier)에 따라 세금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복잡한 규정이 있음. 	New York State Sales and Use Tax (NYC.gov)
플로리다주	주세 6%, 카운티 추가세(surtax)에 따라 총 6% ~ 7.5%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운티별로 부과되는 재량적 판매 추가세(Discretionary Sales Surtax)가 있음. 	Florida Sales and Use Tax (Florida Dept. of Revenue)
캘리포니아주	최저 주세 7.25% (지방세 일부 포함)이며, 로스앤젤레스시 약 9.5% 등 지역에 따라 7.25%~10%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추가세에 따라 최고 세율이 10%를 넘을 수 있음. • 판매자가 일반 운송업체 등을 이용하여 캘리포니아주 외로 작품을 배송할 경우, 판매세 면제 규정이 있음. 	Sales and Use Tax Regulations - Article 4 (CDTFA - CA.gov)

58) Avalara 웹사이트-시카고주 판매세, <https://www.avalara.com/taxrates/en/state-rates/illinois/cities/chicago.html>, (최종접속일: 2025.10.2).

일리노이주	주세 6.25%. 시카고 시내 총 세율은 약 10.25% (주 6.25% + 쿡 카운티 1.75% + 시카고시 1.25% + RTA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장소/인도 장소 기준이 적용됨. • 시카고의 결합 판매세율은 10.25%로 미국 내에서도 높은 편이며, 주세, 카운티세, 시세, 광역 교통세(RTA)로 구성됨. 	Chicago, Illinois Sales Tax Rate (Avalara)
-------	---	---	--

3. 프랑스

□ 간단히 보기

Step 1

아트페어 참여하기 전 체크리스트

-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 내로 미술품을 반입할 때에는 통일된 EU의 규정 및 세관 절차와 서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프랑스의 미술품 통관 및 세금 정산(판매 후 정규화)은 복잡하므로 프랑스 세관(DGDDI)과 국세청(DGFIP) 규정에 익숙한 전문 미술품 운송사나 세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 부가가치세(VAT) 세율은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25년부터 프랑스(5.5%)와 독일(7%)은 미술품 VAT를 인하하여 시장 매력을 높인 반면, 이탈리아(22%)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 보증금을 예치하고 임시 수입 통관절차 (Déclaration d'Admission Temporaire, DDAT)를 이용한다.
- EU 국가 통관에 필수인 경제 운영자 식별 등록 번호(EORI) 및 VAT 등록을 한다.
- 세무 대리인 지정이 의무이므로, 운송 대행사(포워더) 등을 통해 현지 세무 대리인을 확보한다.
- 강화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LCB-FT) 규정 및 변경된 세금 정산 방식을 숙지한다.⁵⁹⁾

Step 2

아트페어 기간 및 사후 판매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 일시 수입 제도를 이용해 보증금 납부 없이 전시 목적으로 미술품을 반입한 후, 페

59) 프랑스 국세청 공식 세무 공보 웹사이트-예술품 부가가치세(VAT),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92-PGP.html/identifiant%3DBOI-TVA-SECT-90-60-20250514>, (최종접속일: 2025.10.2).

- 어 현장에서 미술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미술품 일시 수입을 해제하고, 수입의 목적 및 용도를 변경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 세무 대리인 지정이 의무이므로 세금 납부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정한다.

□ 상세히 이해하기

1) 외국 갤러리의 유럽연합(EU)/프랑스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① EORI 번호(경제 운영자 식별 등록 번호) 사전 등록 및 발급⁶⁰⁾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는 유럽연합(EU) 국가의 세관 당국이 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품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고유 식별자이다. 프랑스를 포함하여 EU 전역에 걸쳐 하나의 공통 식별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경제 주체, 즉 갤러리와 관세 당국 모두에게 효율적이다. 외부에 설립된 모든 회사가 수입과 수출, 통관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식별번호이므로 한국 갤러리가 프랑스 및 유럽연합 국가의 아트페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연합 관세 지역에서 미술품을 통관할 때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⁶¹⁾⁶²⁾ 미술품 운송업체 등 포워더나 대리인이 고객 갤러리를 대신하여 세관 신고 및 기타 수입/수출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EORI 번호가 필요하다. 아트페어 출품작은 일반적으로 일시 수입(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EORI 번호 취득은 필수 요구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송대행사 등을 통해 EORI 번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0)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 웹사이트-EORI 번호, <https://business.gov.nl/international/doing-business-abroad/eori-number-for-all-customs-operations/>, (최종접속일: 2025.10.2).

61) EU 웹사이트-세관 규정,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union-customs-code-ucc-introduction_en, (최종접속일: 2025.10.2);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총국 웹사이트-관세청(DGDDI) 지침, <https://www.douane.gouv.fr/french-customs-information-available-english>, (최종접속일: 2025.10.2).

62) EU 웹사이트-EORI 번호,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customs-operations/economic-operators-registration-and-identification-number-eori_en, (최종접속일: 2025.10.2).

▶ 비EU 경제 주체의 EORI 번호 취득 절차

- 통상적으로 첫 번째 통관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신청한다. 프랑스 아트페어 참가의 경우 프랑스 세관에 신청하지만, 절차적 용이성을 위해 다른 EU국가(예: 네덜란드)를 통해 취득하기도 하므로 운송대행사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 해당 국가 세관의 온라인 시스템 또는 공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별도의 발급 비용은 없다.
- 발급을 위해서는 영문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인명, 법적 형태, 등록지, 한국 주소, 연락처, 한국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등록 증명서(예: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영문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 증빙(영문 발급), 대리 위임장(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서명권자와 통관 담당자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 소요 기간은 수 영업일에서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아트페어 일정에 맞춰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야 한다.

② EU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⁶³⁾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 내로 미술품을 반입할 때는 통일된 세관 절차와 서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단일 행정 문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AD): EU 관세 신고의 공식 모델로 EU 외부 또는 비EU 상품 거래에 필수적인 문서. EU 수입자의 신고서 역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EU 회원국에서 유효한 문서임. 미술품의 상세 내용과 이동 경로를 설명함.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및 판매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
- 입국 요약 신고서(Entry Summary Declaration, ENS): EU 관세 영역으로 물품(작품)이 들어올 때 물품(작품)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수입 통제 시스템(ICS)⁶⁴⁾의 일부로 물품 반입 전 입국 국가의 세관에 제출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EU는 자체적인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며, 이는 상품의 관세 분류(CN 코드)에 따라 결정됨.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wholly obtained) 또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마지막 실질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

63) EU 웹사이트- 통관 관련 규정,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non-preferential-rules-origin_en, (최종접속일: 2025.10.2).

64)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로 간주함. 관세율 적용 및 기타 상업 정책 조치에 영향을 미침.

- 견적 송장(Facture Pro Forma): 판매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물품 이동(전시 선적)에 필수적인 세관 서류이며, 일시 수입(TA) 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이 서류에는 작품의 상세 설명, 수량, 원산지, 통일 품목분류 코드(HS Code), 발송인과 수령인의 법적 정보 (갤러리명, 주소, EORI 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견적 송장이 상업적 거래 가치가 없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따라서 “SANS VALEUR COMMERCIALE - VALEUR POUR LA DOUANE SEULEMENT” (상업적 가치 없음 - 오직 세관 목적의 가치)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견적 송장은 법적 또는 회계적 가치가 없으며, 오직 일시 수입 작품의 성격과 보험 및 추적을 위한 가치를 세관에 알리는 기능만을 수행함.

〈표 II-11〉 통관 및 판매 단계별 서류와 절차

통관 단계	목적	필수 서류	유의 사항
반입(일시 수입 신고)	전시 및 판매 목적의 일시적 반입(관세 및 세금 유예)	견적 송장 (Facture Pro Forma)과 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및 세관 목적의 작품이 가진 가치 임을 명시 • 일시 수입 신고 제도 이용 시 시 관세/세금 보증금 제공
전시 중 판매 발생	미술품 판매 확정	상업 송장 (Facture Commerci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에게 실제 판매 가격을 명시한 상업 송장을 발행 • 납세의 근거 서류
반출	판매 작품의 최종 수입 전환 및 미판매 작품의 재수출	상업 송장(판매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분: 해당 작품에 대한 일시 수입 담보가 해제되고, VAT(프랑스 부가가치세, 5.5%) 및 관세(해당 시) 납부 • 미판매분: 남은 작품은 세관의 확인을 거쳐 재수출(Réexportation)되며 담보가 전액 해제/환급됨.

〈표 II-12〉 견적 송장과 상업 송장

구분	견적 송장(Facture Pro Forma)	상업 송장(Facture Commerciale)
목적	통관(일시 수입) 서류 세관에 작품의 가치 신고용	실제 판매 거래 서류. 구매자에게 대금 청구하고 최종 수입 및 납세 신고용

기재 가치	세관 목적 가치 (보험가액, 재판매 가치)	실제 판매 가격(확정 금액, 대금 청구)
사용 시점	작품 반입 시 세관 제출	판매 확정 시 정규화 전환 신고
법적 효력	없음(견적서 역할)	있음(법적 지불 및 회계 기록)

③ 프랑스 및 EU 내 미술품 반입 절차 및 제도

프랑스 내로 미술품을 반입할 때는 일시 반입과 영구 반입에 따라 절차가 구분된다. 한국 갤러리가 프랑스의 아트페어 참가 목적으로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일시 수입 제도(Temporary Admission)를 활용한다.

▶ 일시 수입 제도⁶⁵⁾

한국 갤러리가 간소하게 통관하는 방법은 일시수입 수입통관 절차(Déclaration d'Admission Temporaire, DDAT)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비EU 국가인 한국 등에서 온 작품이 한정된 기간 동안 판매가 아닌 '전시' 목적으로 EU 역내로 반입될 때, 해당 작품이 재수출된다는 조건 아래 관세(Customs Duties) 및 세금(TVA)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부로 면제해 주는 것을 허용한다.⁶⁶⁾ 작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허가된 목적 즉, 전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재수출되어야 한다.

아트페어에서 판매가 완료된 후에는 판매된 작품은 재수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므로 통관 지위를 판매로 전환하고 세금을 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트페어 종료 후 갤러리 또는 대행 포워드 등을 통해 판매된 작품에 대해 프랑스 세관에 용도 외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즉 일시 수입에서 일반 수입(판매)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판매 작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 **보증금의 예치:** 수입(반입)자인 갤러리는 일시 반입 요청서를 제출하고, 영구 수입 시 납부

65)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웹사이트-일시 수입 제도, <https://www.douane.gouv.fr/fiche/regime-particulier-ladmission-temporaire>, (최종접속일: 2025.10.2).

66) Ibid.; 프랑스 관세법 웹사이트-제169조부터 제174조 및 EU 관세법의 관련 조항,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1570/LEGISCTA000006122082/, (최종접속일: 2025.10.2).

해야 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 보증금은 작품이 판매되지 않아 재수출된 후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2) 외국 갤러리의 프랑스 및 EU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① 관세⁶⁷⁾

EU 관세법상 회화, 판화, 조각, 수집품, 골동품 등으로 분류되는 미술품(HS Code 9701 ~ 9706)은 관세가 면제된다.⁶⁸⁾

② 부가가치세⁶⁹⁾

2025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원작 미술품(œuvres d'art originales), 수집품, 골동품의 최초 판매 및 EU 외부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5.5%의 인하된 VAT 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⁷⁰⁾ 전체 판매 가격에 이 세율을 적용한다.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CIF: Cost, Insurance, Freight)⁷¹⁾ 가치, 즉 작품 가치 및 보험료, 운송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00년 미만 문화재이거나 원작 미술품 또는 수집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20%의 일반 VAT 세율이 적용된다. 세관 관점에서는 회화, 드로잉, 파스텔화 등이 원작 미술품으로 간주한다.

참고로 기존에 이용하던 갤러리 또는 딜러가 작품의 구매가와 판매가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던 VAT 마진 제도(예: €1,500에 구매하여 €2,000에 판매 시 €500에 대해 VAT 부

67) 프랑스 관세법 웹사이트-제169조부터 제174조 및 EU 관세법의 관련 조항,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1570/LEGISCTA000006122082/, (최종접속일: 2025.10.2).

68) Art Régie Transport 웹사이트-수입 시 세관 및 조세 절차, <https://www.artregietransport.com/gestion-des-formalites/formalites-douane-fiscalite-importation/>, (최종접속일: 2025.10.2).

69) Ibid.

70) 이러한 낮은 VAT율은 프랑스가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주요 아트허브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되며 이는 한국 갤러리에 파리 시장의 매력도를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Incoterms) 중 하나로,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의 원가, 운송비, 그리고 최소한의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CIF 조건은 해상 및 내수면 운송에만 사용한다.

과)는 폐지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⁷²⁾

③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프랑스의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외국 갤러리와 같은 비거주자가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한국 세법상 사업소득에 따라 해당 수입을 한국에 신고하여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참고] 프랑스에 세무상 거주하는 판매자의 경우 € 5,000를 초과하는 미술품 판매 시 6.5%의 정액세 또는 36.2%의 양도소득세(19% 세금과 17.2% 사회보장 기여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에 5%씩 감면이 적용되며, 22년 이상 소유 시에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④ 자금세탁방지 규정(LCB-FT)⁷³⁾

프랑스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LCB-FT⁷⁴⁾은 유럽연합(EU)의 지침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 지침(5AMLD)을 국내법에 반영했으며, 이 지침에 따라 미술품 시장 참여자가 LCB-FT 의무 주체로 포함된다.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프랑스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특정 활동(미술품 거래)에 적용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갤러리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아트페어 부스에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U와 FATF는 미술시장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고위험 환경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시적인 참가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72) 2025년 1월 1일부터 미술품, 골동품, 수집품에 대한 VAT 마진 제도를 사용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구매 시 낮은 VAT율을 적용받은 경우, 재판매 시 마진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미술품 거래가 마진 제도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할 때, 2025년부터는 전체 판매 가격에 VAT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EU 외부에서 수입되어 낮은 수입 VAT율을 적용받은 품목에도 적용된다. 마진 제도의 제한으로 인해 회원국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미술품에 대한 VAT 세율을 인하하도록 권장되었으며, 프랑스(5.5%)와 독일(7%)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세율을 인하하였다. 반면, 이탈리아는 22%를 유지하여 프랑스보다 16.5% 더 비싸게 작품이 거래될 수 있다.

73) 프랑스 관세법 웹사이트-통화 및 금융법전 관련 조항,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20196698>, (최종접속일: 2025.10.2).

74) EU 이사회 웹사이트-EU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정책, <https://www.consilium.europa.eu/fr/policies/fight-against-terrorist-financing/>, (최종접속일: 2025.10.2).

▶ 갤러리가 이행해야 할 주요 의무⁷⁵⁾

아트페어에서 €10,000 이상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 한국 갤러리는 다음 LCB-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고객 확인 의무(KYC)** 즉,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신분증, 법인 고객의 경우 법인 정보 및 실소유주 정보 확인해야 한다.)
2.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3. 각 고객 및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고객 확인 조치의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
4. **의심 거래 보고(Declaration de soupçon)**: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과 연관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시도를 발견하면, 프랑스 금융정보분석원인 **Tracfin**에 보고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⁷⁶⁾

① 비EU 사업자의 부가가치세(VAT) 등록⁷⁷⁾

비EU 사업자가 EU 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거나, EU 내에 재고를 보관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등록을 해야 한다.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비거주 외국 기업(non-resident foreign businesses)은 프랑스 VAT 등록이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사업 활동을 계획하는 한국 갤러리는 부가가치세(VAT) 등록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외국 기업에는 VAT 등록 기준 금액(threshold)이 없으므로, 소규모 판매를 계획하더라도 등록이 필수적이다.

75)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총국/금융정보분석원, 예술품과 골동품 시장의 거래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관련 법적 의무, 2020. <https://www.douane.gouv.fr/sites/default/files/2023-03/21/lignes-directrices-lcb-ft-pour-les-marchands-d-art-et-d-antiquite.pdf>;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총국, 세관의 감독을 받는 전문 종사자에 의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LCB-FT) 제도의 이행, 2025. <https://www.douane.gouv.fr/sites/default/files/2025-05/23/M%C3%A9mo-LCB-FT.pdf>

76)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총국 웹사이트, <https://www.douane.gouv.fr/>, (최종접속일: 2025.10.2).

77) 프랑스 조세 웹사이트- 외국 기업 부가가치세 등록 관련, <https://www.impots.gouv.fr/do-foreign-companies-have-register-vat>, (최종접속일: 2025.10.2).

등록을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VAT 납세자 등록 증명서, 회사 정관, 국가 상업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는 사업 활동 시작 또는 VAT 등록 기준 금액 초과 후 2주 이내에 프랑스 국세청의 산하기관인 Service des Impôts des Entreprises (SIE)⁷⁸⁾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업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담당 SIE가 지정되어 있으며, 온라인(impots.gouv.fr)을 통해 대부분의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등록 지연에 대한 벌금은 없지만, 납부해야 할 VAT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② 세금 신고 및 납부

프랑스에 VAT 등록된 국내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월별 VA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비EU 국가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재정 대리인을 통해 월별로 VAT 신고를 해야 한다. 월별 또는 분기별 VAT 신고서는 해당 기간 종료 후 다음 달 19일까지 제출한다. 프랑스에 VAT 등록된 사업자는 판매 시 부과된 VAT에서 구매(수입 포함) 시 지불한 VAT를 공제할 수 있다.

한국 갤러리가 일시 수입 제도를 통해 프랑스에 작품을 반입한 후 프랑스 현장에서 프랑스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수입 후 국내 판매로 통관 지휘를 전환하는 용도 전환 신고를 하고, 프랑스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 5.5%를 납부한다.

③ EU 납부 간소화 제도 One-Stop Shop (OSS)의 이용

납부 간소화 제도 One-Stop Shop (OSS)는 하나의 EU 회원국에 VAT를 등록하고, 이 등록 국가의 포털을 통해 EU 전체 회원국에서 발생한 VAT를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한국 갤러리가 프랑스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작품을 판매할 때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판매 후 EU 내 다른 국가로 작품을 배송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갤러리가 프랑스에서 VAT 등록 후, 프랑스 고객이 아닌 독일이나 벨기에 등 다른 EU 국가 고객에게 작품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경우 활용하면 좋다. OSS 미활용 시에는 판매가 발생하는 모든 EU 국가에 개별적으로 VAT 등록을 하고 각 국가의 세율에 맞춰 VAT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78) SIE는 프랑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행정 기관으로 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예술가, 농업인 등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의 세무 업무를 전담한다. 참고: 프랑스 조세 웹사이트-프랑스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을 위한 관할 기관, <https://www.impots.gouv.fr/contact-professionnel-siee-et-sr-tva>, (최종접속일: 2025.10.2).

④ 세무 대리인 지정 의무

EU 외부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프랑스 내에서 VAT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현지 세무 대리인(Fiscal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한다. 한국 갤러리가 프랑스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판매하여 프랑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때, 프랑스 세무 당국에 VAT 등록이 필요하다. 이때 갤러리는 프랑스 세무 당국에 VAT 신고 및 납부 책임을 질 프랑스 내에 설립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세무 대리인은 프랑스 현지에서 복잡한 프랑스 및 EU 세무 법률을 준수하여 VAT 신고서의 제출, 납부, 기록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프랑스 세무 당국과의 잠재적인 질의 및 클레임 발생 시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미술품 전문 포워드 또는 포워드와 협력하는 현지 관세사 및 회계 법인을 통해 EORI 번호 취득과 함께 세무 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4. 영국

□ 간단히 보기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른 별도의 통관 및 조세, 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아트페어 참가를 계획하는 갤러리는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Step 1

아트페어 참여하기 전 체크리스트

한국의 갤러리는 비영국 역내 과세대상자(NETP)⁷⁹⁾로 영국 부가가치세 및 경제 운영자 식별 등록 번호(EORI number)⁸⁰⁾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해외 갤러리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 및 판매 시 일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VAT 등록 및 일시 수입(Temporary Admission, TA)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및 판매 시 일반 부가가치세의 현금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Postponed VAT Accounting, PVA)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작품 판매 시에는 VAT 세액을 줄이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영국에는 유지하고 있는 수입 미술품에 대한 VAT 마진 제도를 활용한다.

Step 2

아트페어 기간 및 사후 판매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영국 법규에 따라, 미술시장 참여자(Art Market Participant, AMP)로 영국 국세청(HMRC)에 등록하고, 단일 거래 또는 연계 거래⁸¹⁾ 가치가 €10,000를 초과하는 모

79) 영국에서 거래를 하지만 그곳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80) 영국 세관이 상품 수입 및 수출에 관여하는 기업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 번호로 모든 세관 신고에 필수 사항이다.

81) 연계 거래란, 1인 또는 1개의 구매처가 여러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뜻한다.

든 판매에 대해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 CDD)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수입(반입) 절차 후 아트페어에서 판매된 작품에 대해 일시 수입(Temporary Admission, TA)을 해제하고 자유 유통으로 전환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되었던 부가세 부채가 즉시 발생하고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술작품 판매 후 30일 이내에 전환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수입 미술품에 대한 마진 제도(Margin Scheme)는 전체 판매 금액이 아닌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VAT 납부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단기 아트페어 부스는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으로 간주되지 않아 영국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갤러리가 동일한 페어에 반복적으로 참가하거나, 영국 내 직원 등 종속 대리인(Dependent Agent)을 통해 상시적으로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PE)이 성립되어 영국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세히 이해하기

1) 외국 갤러리의 영국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⁸²⁾

① EORI 번호(경제 운영자 식별 등록 번호) 사전 등록 및 확보

한국 갤러리가 화물 운송을 위한 세관 신고(Customs Declaration Service, CDS)⁸³⁾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비영국 역내 과세대상자(Non-Established Taxable Person refers to individuals or companies, NETP)로 영국 부가가치세 및 경제 운영자 식별 등록 번호(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 EORI)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운송 통관 등 관세 대

82)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일시적 물품 수입 신청 지침, <https://www.gov.uk/guidance/apply-to-import-goods-temporarily-to-the-uk-or-eu>, (최종접속일: 2025.10.2.).

83)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세관 신고 서비스 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ustoms-declaration-service>, (최종접속일: 2025.10.2.).

리인을 통해 신고한 후, 그 대리인이 EORI를 대신 책임질 수 있다.

비영국 역내 과세대상자(NETP)는 영국에서 거래를 하지만 사업장을 두지 않은 개인 또는 기업을 의미하며, EORI 번호는 영국 세관이 상품 수입 및 수출에 관여하는 기업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 번호로 모든 세관 신고에 필수 사항이다.

웹사이트⁸⁴⁾에서 무료 신청하며 통상 즉시 또는 수일 내에 발급되지만, 서류상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반려되거나 복잡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신청한다.

② 비영국 역내 과세대상자로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 사전 등록

영국에서 미술품을 판매하려는 한국 갤러리는 영국 내에서 미술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영국 역내 과세대상자(NETP)로서 영국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 등록을 해야 한다. 영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영국 내에 사업 기반이 없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체가 영국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이 의무화된다.

과세대상자 및 부가가치세 등록은 영국 국세청(HMRC) 웹사이트⁸⁵⁾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약 4주가량 소요되므로 폐어 시작 한참 전(최소 6주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영국 부가가치세법을 준수하는 판매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수입 신고 시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VAT 마진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선행 조건이 된다. 아트페어 주최 측(예: Frieze London)은 해외 작가가 작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영국 VAT 번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판매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한 조치, 심지어 해당 대금을 주최 측에 기부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갤러리가 해외 아트페어에 참가하기 전에 필수 선행 조건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통관절차 과정에서, 전시 목적으로 미술품을 영국에 일시적으로 반입할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인 일시수입(Temporary Admission, TA)제도⁸⁶⁾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국

84) 영국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gov.uk/eori/apply-for-eori> (최종접속일: 2025.10.2).

85) 영국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최종접속일: 2025.10.2).

86) Alinea Customs 웹사이트, <https://alineacustoms.com/art-and-customs/>, (최종접속일: 2025.10.2.);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일시 반입 제도,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response-bringing-goods-into-the-uk-temporarily/government-response-to-temporary-admission-call-for-evidence>, (최종접속일: 2025.10.2.).

국세청(HMRC)⁸⁷⁾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 시작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특정 CPC(Customs Procedure Code) 코드를 세관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영국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운송업체나 통관 대리인이 수입 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EORI 번호 및 TA 승인 번호: 통관 신고에 필요한 식별 및 승인 문서.
- 상업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화물 운송 시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작품의 상업적 가치(보험 및 잠재적인 과세 평가용)와 TA 목적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세부 포장 명세서(Detailed Packing List): 각 포장물의 내용물을 상세히 명시해야 함.
- 진품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 작품의 연령, 기원 및 진품성을 입증하는 서류는 특정 세관 절차나 잠재적 관세 감면(예: 골동품)을 위해 요구될 수 있음.

2) 외국 갤러리의 영국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① 관세⁸⁸⁾

영국은 2021년 1월 1일 EU를 최종 탈퇴하면서 EU의 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대체하는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 UKGT)를 도입하였으며, 원본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② 부가가치세 (VAT)

영국은 미술품 수입 시에는 5% 저율 수입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영국 내 판매에 대해서는 일반 부가가치세율인 20%를 적용하는 독특한 부가가치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87) Op. cit., 영국 국세청 웹사이트 참고.

88) Taric Support 웹사이트, <https://www.taric-support.com/nomenclature/en/9700000000.html>, (최종접속일: 2025.10.2.); 영국 통합 온라인 관세 웹사이트,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headings/9701>, (최종접속일: 2025.10.2.).

가. 수입 부가가치세와 일반 부가가치세

수입 부가가치세(import VAT)는 외국 갤러리가 영국 내 반입하는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영국 내 판매 VAT는 미술 작품이 영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판매가격 기준으로 부가되는 VAT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갤러리가 수입 VAT를 이미 낸 경우, 판매 시점에 그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상쇄(환급)되며, 최종적으로 영국 내 최초 구매자(컬렉터)가 부담하는 것이 판매 VAT(20%)이다. 따라서 갤러리가 일시 수입(TA) 제도를 통해 수입 VAT 납부를 유예하고, 이후 영국 내에서 판매를 하여 일시 수입(TA) 해제 및 자유유통 전환 신고를 하면 20%가 구매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갤러리는 수입 VAT 5%를 선납하고 나중에 정산 시 차감하게 된다.

상황별 VAT 시나리오 예시

- 사례 1) 영국 컬렉터에게 일반 20% VAT로 판매 → 최종 소비자는 20% 부담
- 사례 2) 영국 컬렉터에게 판매하되 마진 제도 적용 → 차익에 대해서만 VAT 부과, 세부담 크게 줄어듦.
- 사례 3) 판매가 되지 않은 미술품은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재반출 → 수입 VAT 환급 가능, 별도 판매세 없음.

나. 아트페어 참여시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나-1. 일시 수입(Temporary Admission, TA)제도⁸⁹⁾

전시 목적으로 미술품을 영국에 일시적으로 반입할 경우, 수입 VAT 납부가 유예되는 제도이다. 영국 내로 미술품을 반입할 때는 일시 반입과 영구 반입에 따라 절차가 구분되며 아트페어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미술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VAT 납부가 유예되는 특별 세관 절차인 일시 수입 제도(Temporary Admission, TA)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시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며 판매 가능성이 있는 미술품 및 골동품은 최장 48개월의 TA 기간이 허용된다. 이 기간은 일반적인 TA 기한인 24개월보다 긴 것으로, 예술품 판매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고려한 규정이다.

89) Alinea Customs 웹사이트, <https://alineacustoms.com/art-and-customs/>, (최종접속일: 2025.10.2.);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일시 반입 제도,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response-bringing-goods-into-the-uk-temporarily/government-response-to-temporary-admission-call-for-evidence>, (최종접속일: 2025.10.2).

영국 국세청(HMRC)⁹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 시작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특정 CPC(Customs Procedure Code) 코드를 세관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재정적으로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세관 규정 준수 기록이 양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준 TA를 이용하려면 잠재적인 관세 및 VAT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영국 국세청(HMRC)⁹¹⁾에 예치해야 하며, 이 보증금은 작품이 기한 내에 재수출되거나 영국 내 판매로 전환될 경우 환급된다.

TA 하에 수입된 물품은 원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48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유 유통 상태로 전환되거나 재수출되어야 한다. 재수출 시에는 원래의 수입 신고와 연결하여 TA 약정을 해제하는 별도의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일시 반입된 미술품이 영국 내에서 판매되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 판매 후 30일 이내에 자유 유통 상태로 전환 신고(CPC 4053 000)⁹²⁾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갤러리는 TA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유예되었던 모든 세금, 즉 20%의 표준 VAT가 전체 판매 가격에 즉시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갤러리는 작품 판매를 확정하는 즉시 물류 대행사 또는 세관 대리인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서류(판매 인보이스 사본) 등을 제공하여 전환 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나-2. 수입 VAT 납부 유예 제도(Postponed VAT Accounting, PVA)⁹³⁾

외국 갤러리가 영국 VAT 등록을 완료한 비영국 역내 과세대상자(NETP)인 경우 수입 VAT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수입 VAT 납부 유예 제도를 사용하면, 수입 시점에는 VAT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한 달의 VAT를 VAT 신고서 안에서 납부할 VAT와 환급 가능한 VAT로 상계하는 방식이다. 갤러리의 정기 VAT 신고서상의 매출세와 매입세에 동시에 기록하여 실질적인 현금 지출 없이 상쇄할 수 있다. 영국 VA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 신고 시 VAT 등록을 명기해야 한다. 보증이 필요 없고 수입(반입) 시점에 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유용하다.

90) Op. cit., 영국 국세청 웹사이트 참고.

91) Ibid.

92) Customs Procedure Code는 관세 절차코드를 말하며 4053 000은 내수 전환(자유 유통 전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 코드이다.

93)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수입 부가가치세, <https://www.gov.uk/guidance/check-when-you-can-account-for-import-vat-on-your-vat-return> (최종접속일: 2025.10.2).

나-3. 마진 제도(Margin Scheme)의 활용⁹⁴⁾

마진 제도는 상품의 전체 판매 가격이 아닌,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의 차액(이윤, Margin)에 대해서만 VAT(1/6, 즉 약 16.67%)를 부과하는 선택적 회계 방식을 말한다. 중고품, 미술품, 골동품, 수집품 판매 시 구매가와 판매가 차액(마진)에 대해서만 VAT를 과세하며, VAT는 이 차액의 16.67%(1/6)로 계산한다. EU가 2025년부터 마진 제도를 제한하는 데 비해, 영국이 VAT 마진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EU의 2025년 마진 제도 제한 이후 런던 미술시장에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국 갤러리가 이미 소장하고 있는 작품(즉, 매입 가격이 있는 작품)을 영국에서 판매할 경우, EU 국가들에서 전체 판매 가격에 VAT가 부과되는 것보다 영국에서 마진에 대해서만 VAT를 내는 것이 총 세금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판매 시 카탈로그 가격에는 갤러리 수수료와 VAT가 포함되어야 한다. 갤러리가 마진 제도를 선택해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작품이 판매되어 TA에서 자유 유통으로 전환될 때 (CPC 4053 000 사용), 이에 대한 기록이 VAT 마진 제도에 따른 판매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표 II-13〉 일시적인 미술품 수입 및 판매 시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

제도	내용
일시 수입 제도 (Temporary Admission, TA)	전시 목적으로 미술품을 영국에 일시적으로 반입할 경우, 수입 VAT 납부가 최장 48개월 동안 유예되는 제도. 미술품 반입 최소 30일 전에 영국 국세청에 신청 및 승인 필요. 보증금 예치. 신고 미술품은 48개월 이내에 자유 유통 상태로 전환되거나 재수출되어야 함.
수입 VAT 납부 유예 제도 (Postponed VAT Accounting, PVA)	수입 시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대신, 수입한 달의 VAT를 VAT 신고서 안에서 납부할 VAT와 환급 가능한 VAT로 상계하여 실질적 현금 지출이 없음.
마진 제도 (Margin Scheme)	상품의 전체 판매 가격이 아닌, 판매 가격과 구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VAT(1/6, 즉 약 16.67%)를 부과하는 선택적 회계 방식. 중고품, 미술품, 골동품, 수집품 판매 시 구매가와 판매가 차액에 대해서만 VAT를 과세함.

94) 영국 사업체 지침 웹사이트-마진 제도, <https://www.gov.uk/guidance/the-margin-and-global-accounting-scheme-vat-notice-718>, <https://www.gov.uk/vat-margin-schemes>, (최종접속일: 2025.10.2).

③ 자금세탁방지(AML) 규제(MLR2017)⁹⁵⁾⁹⁶⁾

영국 내 미술시장 참여자는 2017년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이체 규정(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and Transfer of Funds Regulations 2017, MLR 2017)의 적용을 받는다. 영국 밖에서 온 참여자의 경우 특정 기준(AMP threshold, €10,000 이상인 미술품)을 초과하는 미술품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⁹⁷⁾ 따라서 한국 갤러리 역시 단일 거래 또는 연계된 일련의 거래 가치가 €10,000 이상인 미술품을 거래하거나 판매 중개하는 경우, 미술 시장 참여자(AMP)로 분류되어 영국 국세청(HMRC)에 자금세탁방지 감독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 **고객실사(CDD) 의무:** AMP는 €10,000 이상의 모든 거래에 대해 고객 실사(CDD)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고객의 신원(KYC)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거래 완료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아트페어 현장에서 고객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갤러리는 고객 잠재 구매자에 대해 사전 신원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객 현금 거래 제한:** 갤러리는 고객 현금 거래자(High Value Dealer, HVD)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단일 거래 또는 연계된 일련의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현금 결제액이 €10,000 이상일 경우 강화된 CDD가 요구된다. 현금에는 지폐, 동전, 여행자 수표뿐만 아니라 고객이 갤러리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지불하는 현금도 포함된다.

④ 고정사업장⁹⁸⁾과 법인세

법인 형태의 외국 갤러리는 영국 내 활동이 고정사업장(PE)을 구성하여 영국 법인세(Corporation Tax, CT)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PE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

95) 영국 자금세탁방지 규제 웹사이트,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conomic-crime-supervision-handbook/ecsh21500>, (최종접속일: 2025.10.2).

96) 해당 자금세탁방지(AML) 규제(MLR2017)는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기준이다.

97) 영국 고객 미술 거래 및 미술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제 지침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igh-value-dealers-art-market-participants-guidance/financial-sanctions-guidance-for-high-value-dealers-art-market-participants>, (최종접속일: 2025.10.2).

98) 영국 국세청 국제 메뉴얼 웹사이트,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81010>, (최종접속일: 2025.10.2).

부가 수행되는 물리적으로 고정된 사업장(Fixed Place of Business, FPOB)이 있거나, 기업(갤러리)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 대리인(Dependent Agent)이 있는 경우 성립한다.

가. 고정된 사업장(PE) 판단 기준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일시적인 성격 이상으로 지속되는 장소인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나, 영국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되는 사업장은 영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아트페어 부스는 보통 며칠에서 길어도 2주를 넘기지 않는 단기적인 장소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단일 아트페어 참가는 물리적 고정사업장(FPOB)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고정사업장(PE)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갤러리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영국 아트페어에 반복 참가할 경우, 각 단기 사용 기간이 합산되어 영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갤러리가 영국 내 관계사 소유의 사무실을 영업 기지로 사용하거나, 부스를 운영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PE) 위험이 증가한다. 단, 업장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만을 가지는 경우 고정사업장(PE)로 간주하지 않는다.

갤러리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PE)이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내 물리적 거점을 최소한의 기간(페어 기간)으로 제한하고, 영국 내 직원이나 대리인에게 갤러리를 대리하여 판매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상습적, 반복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계약 및 운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나. 이중과세방지협정(DTC)의 적용⁹⁹⁾

영국 국내법과 1996년 체결된 '대한민국-영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C)'에 의해 규율 법인세 과세권을 배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영국 내에 PE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 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99) 영국-대한민국 이중과세방지협정(DTC) 웹사이트, <https://www.legislation.gov.uk/uksi/1996/3168/made>, (최종접속일: 2025.10.2)

〈표 II-14〉 유럽연합 및 영국, 국가별 통관 비교

국가	주요 통관 서류	일시 반입 가능 여부	일시 반입 조건 /기간	일시 반입 시 보증금/면제	영구 반입 시 주요 특이 사항
유럽 공동 (영국 포함)	SAD, ENS, EORI 번호,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oO	가능	최대 12개월 (전시 목적) 관세/세금 면제 (재수출 조건) 판매 목적시		
프랑스 파리	SAD, ENS, EORI 번호,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oO	가능	6개월 (최대 2년 갱신)	관세/VAT 보증금 요구 (은행 보증, 예치금, 특정 기관 면제)	
영국 런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oO	가능	2년 이내 자유 유통 전환 또는 재수출	5% 수입 VAT 유예, 보증금 요구 가능	미술품 5% 수입 VAT (인하율)

〈표 II-15〉 유럽연합 및 영국, 국가별 VAT 비교

지역	표준 VAT 세율	미술품 적용 VAT 세율 (판매)	미술품 적용 수입 VAT 세율	미술품 관세 유무 및 평균 세율	마진 제도 적용 여부	적용 시점 /특이사항
EU	17% ~27% (회원국별 상이)	회원국별 상이	회원국별 상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HTS 97장)	2025년부터 제한적	2025년 1월 1일 EU VAT 지침 2022/542 시행
프랑스	20%	5.5%	5.5%	면제	2025년부터 제한적	2025년 1월 1일부로 VAT 5.5% 유지 확정
영국	20%	16.67% (마진에 대해)	5%	0% (대부분)	유지	EU와 달리 마진 제도 유지

〈표 II-16〉 프랑스와 영국의 VAT 등록 의무 비교

국가	VAT 등록 의무	등록 기준 금액	세무 대리인 필수 여부	주요 필요 서류	예상 등록 소요 기간	특이사항
프랑스	의무	없음 (비EU 사업자)	필수 (EU 외부 기업)	본국 VAT 등록 증명서, 회사 정관, 상업 등 기부 등본	최소 2주	등록 지연 시 VAT 이자 부과
영국	의무 (NETP)	없음 (NETP)	대리인 선택 가능	HMRC 온라인 등록	최대 4주	미등록 시 판매 대금 지급 보류 또는 귀속 가능

5. 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

□ 간단히 보기

아부다비(Abu Dhabi Emirate)는 아랍에미리트(UAE)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토후국으로 아트페어에 참가하거나 미술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UAE 관세,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등 표준 세법을 따라야 한다. UAE 통관 및 수입 판매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아부다비 등 UAE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들은 아트페어 주최 측과 현지 에이전시나 포워딩 업체를 통해 통관절차를 지원받는 것이 좋다.

Step 1

아트페어 참여하기 전 체크리스트

-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랍에미리트(UAE) 통관절차를 거친다. 아부다비 전자 세관 포털을 통해 수입 신고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한다.
- 미술품의 전시 및 거래를 위해서는 아부다비 경제 개발부(DED)의 전시 허가증과 상업 면허 또는 임시 영업 허가(Temporary Trade License)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부다비 아트페어 주최 측에서 일괄처리 하거나 지원해 주므로 사전에 주최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 UAE 정부는 공중 보건, 국가 안보 및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수입을 제한한다. 내용물 심사를 통해 이슬람 원칙이나 문화적 규범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출판물, 미술품 및 미디어는 명시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므로 잠재적으로 민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관련 UAE 문화 당국에 예비 문화 검토 또는 비공식적인 지침을 구한다.
- 아트페어가 끝난 후 미술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재수출 신고 절차가 필수적이다.

Step 2

아트페어 기간 및 사후 판매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 UAE 내에서의 미술품 수입, 구매 또는 판매에는 5%의 표준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된다. 한국 갤러리처럼 비거주 사업자의 경우 UAE 내에서 직접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¹⁰⁰⁾ 다만, 거래 상대가 부가가치세 등록자인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적용 대상 확인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 법인세는 UAE 내에서 상업 면허를 가지고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및 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나, 외국 법인 및 개인의 경우, UAE에서 지속적 또는 정기적인 방식으로 무역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복적 아트페어 참여나 현지 직원을 통해 지속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상세히 이해하기

아랍에미리트(UAE)는 적극적으로 예술 및 문화 부문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근 제정된 “예술 부문 역량 강화에 관한 연방 법령 제29호(2024년)”(이하 “예술법”)¹⁰¹⁾은 UAE 전역의 예술 부문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일된 국가 법률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적극 예술 기관에 상당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잠재적인 세금 면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은 UAE를 선도적인 글로벌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이는 해외 미술 사업체가 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확장하려는 경우 매우 유리하고 인센티브가 부여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률은 “예술 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어 한국의 상업 갤

100) UAE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일정 매출 기준(연간 375,000 AED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VAT 등록이 의무화된다. 참고: Dhruva Consultants “Article 7, Mandatory Legislation”, VAT Handbook, A compilation of UAE VAT Legislation, 2021, pp. 46. <https://dhruvaconsultants.com/wp-content/uploads/2025/07/WTS-Dhruva-VAT-Handbook-UAE.pdf>

101) Federal Decree by Law On Empowering the Arts Sector, Issued Date 01 Oct 2024 Effective Date 13 Nov 2024. 참고: 아랍에미리트 법령 웹사이트-예술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법령, <https://uaelegislation.gov.ae/en/legislations/2708>, (최종접속일: 2025.10.2).

러리나 영리 목적의 개인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예술법의 직접적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상업 갤러리 등은 일반적인 UAE의 관세 및 표준 세법을 따라야 한다. 복잡한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UAE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갤러리들은 사전에 아트페어 주최 측과 현지 에이전시나 포워딩 업체를 통해 통관 차를 지원받는 것이 좋다.

1) 외국 갤러리의 아부다비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① UAE 수입 및 통관 신고¹⁰²⁾

미술품을 포함하여 UAE로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되는 모든 상품은 세관에 도착할 때 공식 디지털 통관신고 시스템 또는 해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입 신고서(Import Declaration)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한다. 특히 60,000 AED(한화 약 2,300만원)를 초과하는 고가 품목의 경우, 의무적인 디지털 신고 절차가 적용된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각 별도의 공식 세관 통관 포털을 운영한다. 두 시스템은 기능상 유사하지만, 관할 지역 및 적용 규정, 절차, 행정 시스템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아부다비 통관 포털 (Abu Dhabi Customs)¹⁰³⁾을 통한 수입 신고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경우 아부다비 통관 포털(Abu Dhabi Customs)을 이용한다. 아부다비 공항과 항만(예: Khalifa Port, Abu Dhabi International Airport 등)을 통한 수출입, 전시 참가, 물품 반입/반출 시 이 통관 포털을 통해 세관의 공식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신고, 서류 제출, 상담, 승인을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로그인(거주자의 경우 UAE Pass를 통해,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 정보 제공) 후 여행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신고할 품목에 대한 상세 설명, 신고 가치 및 통화 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서 제출 후, 세관에 제시하기 위해 디지털 증명서 또는 인쇄본 형태의 승인 증명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비용은 무료이다. 특

102) 제약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아랍에미리트 통관 및 운송,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5&rowCnt=10&menuId=MENU01805&maxIndex=00473994579998&minIndex=0047399347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linkId=47399393>, (최종접속일: 2025.10.2)

103) 아부다비 통관 웹사이트, www.adcustoms.gov.ae, (최종접속일: 2025.10.2).

히 두바이 포탈¹⁰⁴이 아닌 아부다비 통관 시스템에서 신청·처리해야 지역 내 법적 효력이 적용된다는 점에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② 아부다비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

운송업체나 통관 대리인이 수입 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수입 신고서(Import Declaration)(또는 ATA 까르네¹⁰⁵): UAE 입국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자 신고 문서
- 보증금(ATA 까르네가 없는 경우): 임시 수입은 일반적으로 해당 관세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요구함. 고가 미술품의 경우, 이러한 보증금은 상당한 자본을 묶어둘 수 있어 갤러리나 예술가에게 상당한 현금 흐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해야 함.
- 상업 송장/포장명세서(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 사전 통관절차를 위한 문서. 수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며, 상품의 재료와 용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함.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함.
- 항공 운송장(Air Waybill, AWB)¹⁰⁶ 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¹⁰⁷: 상업 송장과 함께 외국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상업 송장과 유사하게 상품의 재료와 용도의 설명이 포함됨.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함.
- 전시 허가증

104) 참고: 두바이 통관 포탈 (Dubai Customs declare.customs.ae). 두바이 토후국(Dubai Emirate) 내 항만(Jebel Ali 등)·공항을 통한 수출입 시에 이용한다. 두바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무역 플랫폼이자 기관명인 두바이 트레이드(Dubai Trade)와 연동되어 관련 전체 행정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 사업자 등록, 무역 허가, 라이선스 신청 등 무역 행정 관련 신고 및 신청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105) 판매가 아닌 전시 목적의 반입을 위한 서류로 반입 작품에 대하여 재수출(재반출)해야 하므로, ATA 까르네를 통해 미술품을 반입한 후,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미술품은 임시 수출 상태에서 영구 수출 상태로 전환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06) 비유가증권이며, 단순히 화물 운송 계약의 체결·수취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정된 수하인(Consignee)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 유통이 불가하다. 비교적 간단하며 발행과 인도 절차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주로 항공 운송, 신속 인도에 중점을 둔 화물에 사용한다.

107) 유가증권으로, 법적으로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 원본 소지자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양도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며, 거래 및 금융(신용장 결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거래관계와 금융 상황에 따라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 등으로 구분한다.

- 상업 면허 또는 임시 상업 활동 허가증
- 제한 품목 허가증(Permit for Restricted Goods): 문화적으로 민감하거나 제한된 품목을 들어올 때 필수적인 문서이며 통관을 위해 요구될 수 있음.

③ 전시 허가증 발급

미술품 판매가 포함된 상업 및 비상업 전시회 모두 행사 주최측 또는 아부다비 문화관광부(DCT)에서 발행하는 전시 허가증(Exhibition Permit)이 필요하다. 참여 갤러리의 행사 장소 사용, 전시품 배치, 안전 규정 준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다.

참여 갤러리는 아트페어 주최 측이나 전시장 등을 통해 전시 참가 및 허가 관련 조건에 대해 협의한다. 일반적으로 주최 측이 신청 절차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나 갤러리가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 허가 신청서에 전시 기간, 장소, 전시품목, 참가 업체 정보 등이 포함되어 제출해야 한다. 상업 면허증(DED), 보험 증명서(전시물 손상 또는 사고 대비), 안전 및 보안 플랜, 전시품 목록 및 세부내역, 기타 주최기관 또는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심사 통과 시 전시 허가증이 발급되며 전시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다.

④ 상업 면허 또는 임시 영업 허가증 발급

아부다비 정부의 경제 개발부(ADDED)는 수입/수출을 포함한 상품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상업 면허(Commercial License)를 발급한다. 현지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거나 미술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트페어처럼 일시적 참가 목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현지 영업을 위한 상업 면허 취득이 면제되거나 임시 영업 허가(Temporary Trade License)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최 측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무허가 판매 시에는 법적제재, 벌금 부과, 사업 중단 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시 상업 허가는 기간 및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며, 아부다비 경제개발부(DED) 또는 문화관광부 관련 부서에 신청한다.

가. 외국 갤러리의 임시 상업 활동 허가(Temporary Trade License)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갤러리는 일반적으로 아부다비 정부의 경제개발부(ADDED) 또는 문화관광부(DCT)와 관련된 라이선스나 이벤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기적인 상업 활동(예:

작품 판매)을 위해 아부다비 경제개발부가 발급하는 임시 상업 라이선스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아트페어의 경우, 아트페어 주최 측(아부다비 아트/DCT)이 포괄적인 이벤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참가 갤러리(외국 갤러리)에 대해 별도의 임시 영업 허가를 대신 처리해 주거나, 주최 측의 라이선스 하에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접적인 '외국 갤러리 대상 아트페어용 임시 영업 허가'에 대한 단일화된 세부 절차는 공개된 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관련 기관의 정보를 종합하여 유추할 수 있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부다비에서 전시회와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주체는 문화관광부(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DCT)의 이벤트 라이선스 시스템(Events Licensing System, ELS)을 통해 허가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갤러리 소유자, 시설 소유자, 이벤트 장소 소유자 또는 이벤트 주최자다. 일반적으로 이벤트 또는 전시회 관련 활동에 대한 유효한 무역 라이선스(Trade Licence)를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갤러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또는 신청 과정 중, 아부다비 아트페어의 전시자 관계팀에 외국 갤러리의 단기 작품 판매 활동에 필요한 정확한 임시 영업 허가(Trade License) 또는 상업 활동 허가(Commercial Activity Permit)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나. 외국 법인의 상업 면허

일반적인 상업 면허(Commercial License)를 취득은 외국인에게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높고(평균 AED 20,000 정도),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복잡한 문서(사무실 임대 계약, 파트너 여권 사본, 법인 설립 문서 등)를 요구한다. 외국 법인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아부다비 경제 개발부(ADDED)에 지점을 등록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관할 당국 면허 사본, 이사에게 부여된 공증된 위임장 사본, 이사 여권 사본, 50,000 AED의 은행 보증금, 감사인의 서한이 포함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7,500 AED)하여 승인되는 경우 1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한 등록 증명서가 발급된다. 아부다비에서 물리적 지점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적 절차와 상당한 은행 보증금을 요구한다.

[참고] 상업 면허 발급 절차¹⁰⁸⁾

1. **사업 계획 및 활동 범위 결정:** 미술품 판매와 관련된 활동명과 활동 범위를 확정한다.
2. **사업체 명칭 결정 및 예약:** 사업체 이름을 정하고, 중복 여부 확인 후 예약한다. 이름은 아부다비 경제 개발부(DED) 규정에 맞게 승인받아야 한다.
3. **서류 준비:** 사업자 신분증명서(사업자, 현지 스폰서 신분증 등), 사업장 임대 계약서(사무실, 매장 등), 사업 계획서 및 투자 증빙서류(필요시), 기타 DED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참고: UAE에서 모든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물리적 주소를 보유해야 한다. 회사의 사업장과 위치는 각 토후국 경제개발부가 정한 요건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구획 정책(zoning policy)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DED에 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 신청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을 납부한다.
5. **허가 심사 및 승인:** DED가 서류를 검토하고, 조건 부합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6. **면허 발급:** 심사 및 승인 후 상업 면허증이 발급된다. 면허증에는 사업자 이름, 사업 내용,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다.
7. **아부다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록 및 기타 절차:** 면허를 받은 후, 필요시 세금 등록(VAT 등), 은행 계좌 개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⑤ 아부다비 미술품 반입 시, 특별 허가 제도 확인¹⁰⁹⁾

UAE 정부는 공중 보건, 국가 안보 및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수입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술품의 경우 내용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슬람 원칙이나 문화적 규범과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출판물, 미술품 및 미디어는 명시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이슬람의 가르침, 가치, 법률 및 품위에 도전하거나 어긋나는 인쇄물, 모든 종류의 출판물, 유화, 사진, 미술품, 그림, 카드, 서적, 잡지, 석조 조각품 및 마네킹”으로 확장된다. 제한 품목의 경우, 수입 전에 관련 당국의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108) Mirr Asia 웹사이트-아부다비 회사 설립, <https://www.mirrasia.com/abu-dhabi>, 2(최종접속일: 2025.10.2), UAE 경제관광부 웹사이트-UAE 회사 설립, <https://www.moet.gov.ae/en/establishing-companies>, (최종접속일: 2025.10.2).

109) 월드 아트 아부다비 웹사이트-아랍에미레이트 미술법의 새 시대 개막, <https://worldartdubai.com/a-new-era-for-art-law-in-the-uae>, (최종접속일: 2025.10.2).

▶ 미술품 내용 심사 절차

UAE 미디어 위원회가 예술 작품의 유통 승인 및 국경을 통한 미디어 자료 반입 규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아부다비 문화관광부(DCT Abu Dhabi)는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 영향 평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 문화 검토(Preliminary Cultural Review)”를 수행한다.

상업 갤러리의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내용 검토와 관련 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러 자료에서 이슬람 원칙과 문화적 가치에 상충되는 미술품에 대한 제한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예술법”도 예술 기관이 “중요, 종파주의, 인종적 또는 종교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화적 제한을 이해하고 따르지 못할 경우, 통관 지연, 작품 압수, 상당한 벌금, 그리고 잠재적인 법적 조치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갤러리는 선적을 시작하기 전에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 철저한 자체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민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관련 UAE 문화 당국(예: UAE 미디어 위원회,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에 예비 문화 검토 또는 비공식적인 지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국 갤러리의 아부다비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① 관세¹¹⁰⁾

UAE의 일반적인 임시 통관절차가 아닌 일반 통관절차를 밟을 경우, 상업 미술품도 원칙적으로 5%의 관세가 부과된다. 정확히는 UAE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되는 표준 관세율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치(운송 및 보험료 포함)의 5%이다.

회화, 드로잉, 파스텔, 콜라주, 판화, 석판화 및 조각품과 같은 원작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HS(Harmonized System) 97류에 해당하는 원작 미술품에 대한 특정 관세는 명시적으로 5% 가치로 기재되어 있다.¹¹¹⁾ 이 세율은 작품이 골동품(예: 100년 이상 된 작품)으로 분류되든 현대 작

110) UAE 정부 웹사이트, <https://u.ae/en>, (최종접속일: 2025.10.2.); Op. cit., 아부다비 통관 웹사이트.

111) GCC 통합 관세율표 2022. 일부 자료에서는 미술품에 대해 0%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나 GCC 통합 관세율표 등 공식 관세 데이터는 CIF 가치의 5%로 적혀 있다. 따라서 공식 UAE 세관 당국에 잠재적인 0% 면제 대상 가능성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면제는 상업 미술품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이 아닌 매우 구

품으로 분류되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아트페어 참가 시, 작품이 단기간 전시 후 6개월 이내 재수출되는 경우 재수출품 관세 환급 제도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일시 수입 및 관세 면제

‘전시’ 목적으로 반입되는 미술품 컬렉션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관세 면제(Temporary Customs Exemption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시 주최 측의 공식 확인서와 상세 목록을 제출하고 임시 통관 신고(Temporary Admission Declaration)를 하면 보증금 설정을 통해 관세 납부를 유예하고 작품 재수출 시 환급받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아트페어 주최 측과 이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참고로, 새로운 “예술법”(연방 법령 제29호 2024년)에 따라 정의된 비영리 예술 기관은 관세 면제 자격이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또한, 판매가 아닌 ‘전시’ 목적의 임시 수입은 특히 ATA 카르네를 통해 처리될 때 관세 유예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VAT)¹¹²⁾

UAE 내에서의 미술품 수입, 구매 또는 판매에는 5%의 표준 VAT가 적용된다. 한국 갤러리처럼 비거주 사업자의 경우 UAE 내에서 과세대상 공급, 즉 작품 판매를 직접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등록 의무가 생긴다.¹¹³⁾ 다만, 거래 상대가 부가가치세 등록자인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체적이고 조건부일 가능성이 높다.

112) UAE 정부 웹사이트-부가가치세,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finance-and-investment/taxation/vat/valueaddedtaxvat>, (최종접속일: 2025.10.2).

113) UAE 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거나 일정 매출 기준(연간 375,000 AED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VAT 등록이 의무화 된다. 참고: Dhruva Consultants “Article 7, Mandatory Legislation”, VAT Handbook, A compilation of UAE VAT Legislation, 2021, pp. 46. <https://dhruvaconsultants.com/wp-content/uploads/2025/07/WTS-Dhruva-VAT-Handbook-UAE.pdf>

상황별 시나리오 예시

- 사례 1) 거래 상대가 개인 컬렉터이고 한국 갤러리(비거주 사업자)가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등록 의무가 생긴다.
- 사례 2) 거래 상대가 현지 갤러리나 뮤지엄, 기관 등 부가가치세 등록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 및 신고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한국 갤러리는 부가가치세 등록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UAE 내 공급 거래, 즉 아트 페어 참가 시 부스 임대료, 작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VAT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시 주최자와의 계약서 등에서 부스 및 서비스 비용에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행사 인보이스 처리와 갤러리의 대외판매 인보이스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③ 법인세¹¹⁴⁾

법인세는 UAE 내에서 상업 면허를 가지고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및 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나, 외국 법인 및 개인의 경우, UAE에서 지속적 또는 정기적인 방식으로 무역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UAE는 연방 법인세(CT)를 사업 순이익에 부과하며, 이중세율 구조로 과세 소득 375,000 AED까지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375,000 AED를 초과하는 과세 소득에는 9%의 세율이 부과된다.

100만 AED 미만의 사업소득은 법인세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나 비거주 개인의 UAE 원천 연간 소득이 100만 AED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등록이 요구된다.

▶ 지속적 또는 정기적인 사업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다음 경우, 지속적 또는 정기적인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 반복적 참여
- 일시적이라도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지속적 판매

114) UAE 연방세무청 웹사이트, <https://tax.gov.ae/ar/default.aspx>, (최종접속일: 2025.10.2.); 경제지표 웹사이트-아랍 에미레이트, 법인 세율,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arab-emirates/corporate-tax-rate>, (최종접속일: 2025.10.2).

- UAE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를 구축하고 반복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 현지 물류 또는 보관을 이용하는 경우

④ 세금 신고 및 납부

세금 등록 불이행, 기한 후 신고, 부정확한 신고, 또는 기한 후 납부는 상당한 벌금 및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연 14%의 벌금이 월별로 부과될 수 있다. 세금 납부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UAE에서 공인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세무 대리인은 VAT 등록, TRN 취득, 세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금 분쟁 해결, 세무 감사 중 대리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세금등록번호(TRN) 발급

UAE에서 VAT 또는 법인세에 등록된 사업체는 UAE 연방세무청(FTA)의 포털¹¹⁵⁾을 통해 TRN(Tax Registration Number)라는 고유한 15자리 세금 등록 번호(TRN)를 받는다. VAT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포함한 모든 세금 관련 신고에 필수적이며, 합법적으로 VAT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데 필요하다.

나. 세금 납부

VAT 및 법인세를 포함한 UAE의 세금은 UAE 연방세무청(FTA)의 EmaraTax 포털¹¹⁶⁾을 통해 납부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신용/직불 카드(UAE 최대 규모 은행인 FAB Magnati 포털을 통해 납부), 국내/국제 송금 등이 있다.

-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납부 기한은 세금 기간 종료 후 28일 이내이다. 분기별(3개월 단위)로 UAE 연방세무청(FTA)에 VAT 신고서를 전자 제출하며 신고서에는 판매액, VAT 부가액, 매입세액공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 VAT 대상 거래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에 VAT 5%를 별도로 표시한다. 신고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한다.

115) UAE 연방세무청 EmaraTax 웹사이트, <https://eservices.tax.gov.ae/#/Logon>, (최종접속일: 2025.10.2).

116) Ibid.

- **법인세:** 신고는 관련 재정 연도(세금 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납부한다. (예: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재정 연도의 경우,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이다)

6. 홍콩

□ 간단히 보기

홍콩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에 따라 미술품 거래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세금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수입 관세, 수출 관세, 부가가치세(VAT), 상품 및 서비스세(GST), 일반 판매세가 없다.

Step 1

아트페어 참여하기 전 체크리스트

- 면제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후 14일 이내¹¹⁷⁾에 정확하고 완전한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 수출입 신고서는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업체(<https://www.brio.com.hk/>, <https://www.ge-ts.com.hk/cloud/zh/>, <https://www.tradelink.com.hk/en/>)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Step 2

아트페어 기간 및 사후 판매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 홍콩은 자유무역 정책과 기본법 제108조(낮은 세율 정책)¹¹⁸⁾을 통해 대부분의 수

117) 일은 수입일로부터 다음날을 1일로 계산하며 그 후 중간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째까지 계산한다. 단, 14일째가 공휴일, 강풍 경보일(태풍 신호 8호 이상 계양) 또는 검은 비바람(Black Rainstorm) 경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 강풍 경일 또는 검은 비바람 경보일이 아닌 다음 날로 시간 제한이 연장된다. 참고: 홍콩 수출입 일반 규정 웹사이트,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A>, (최종접속일: 2025.10.2).

118)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세금 시스템을 운용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이전에 홍콩이 추구했던 낮은 세율 정책을 참고하여,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 감면, 공제 및 면제, 기타 세금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을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참고: 홍콩 기본법 웹사이트-제108조, <https://www.fstb.gov.hk/tb/en/business/general/policies-principles-of-general-revenue.htm#:~:text=Article%20108%3A&text=The%20Hong%20Kong%20Special%20Administrative%20Region%20shall%2C%20taking%20the%20low,and%20>

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갤러리가 구매자로부터 판매세를 등록, 징수 또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 판매 후의 준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어 있다.

- 단순히 전시하는 행위와 적극적인 거래 행위를 구분하기 때문에 갤러리들이 홍콩에서 직접 판매 활동을 할 경우, 주로 법인세 및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아트페어에서 직접 판매 활동에 참여할 경우, 홍콩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단기적인 사업 활동이라도 공식적인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례 사업자등록 수수료 납부와 같은 지속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관리한다.
- 갤러리들은 단순히 일회성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홍콩 세무국(IRD)¹¹⁹⁾이 고정사업장이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조약의 보호적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홍콩 세무국(IRD)에 일단 신고는 하되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보호적 신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상세히 이해하기

1) 외국 갤러리의 홍콩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① 홍콩 내 통관¹²⁰⁾

홍콩은 자유무역 정책과 낮은 세율 정책을 통해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 관세, 수출 관세, 부가가치세(VAT), 상품 및 서비스세(GST), 일반 판매세가 없다. 따라서 갤러리가 구매자로부터 판매세를 등록, 징수 또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 판매 후의 준수 절차

가 크게 간소화되어 있다. 다만, 면제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정확하고 완전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출입 신고서는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업체¹²¹⁾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② 홍콩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서류

무세금 제도이나 정확한 품목분류(예: 적절한 HS Code¹²²⁾사용),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원산지 증명서 등 정확한 서류 제공 등을 장려한다. 운송업체나 통관 대리인이 수입 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수입 신고서(Import Declaration)(또는 ATA 까르네¹²³⁾): 통관 신고에 필요한 승인 문서. 면제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모든 경우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후 14일 이내¹²⁴⁾에 수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 등을 기재
- 상업 송장/포장명세서(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 사전 통관절차를 위해 필요함. 미술품의 재료와 용도,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 등을 기재
- 항공 운송장(Air Waybill, AWB)¹²⁵⁾ 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¹²⁶⁾: 상업 송장과 함께 외

121)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과 같다: Trade Link 웹사이트, <https://www.tradelink.com.hk/en/>, GE-TS 웹사이트, <https://www.ge-ts.com.hk/cloud/zh/>, Brio 웹사이트, <https://www.brio.com.hk/>

122)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표준 코드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시스템이다. 주로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하고 관리하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123) 판매가 아닌 전시 목적의 반입을 위한 서류로 반입 작품에 대하여 재수출(재반출)해야 하므로, ATA 까르네를 통해 미술품을 반입한 후,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미술품은 임시 수출 상태에서 영구 수출 상태로 전환하여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124) 일은 수입일로부터 다음날을 1일로 계산하며 그 후 중간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째까지 계산한다. 단, 14일째가 공휴일, 강풍 경보일(태풍 신호 8호 이상 계양) 또는 검은 비바람(Black Rainstorm) 경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 강풍 경일 또는 검은 비바람 경보일이 아닌 다음 날로 시간제한이 연장된다. 참고: Op. cit., 홍콩 수출입 일반 규정 웹사이트.

125) 비유가증권이며, 단순히 화물 운송 계약의 체결·수취를 증명하는 서류로 지정된 수하인(Consignee)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 유통이 불가하다. 비교적 간단하며 발행과 인도 절차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주로 항공 운송, 신속 인도에 중점을 둔 화물에 사용한다.

126) 유가증권으로, 법적으로 화물의 소유권을 증명, 원본 소지자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양도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며, 거래 및 금융(신용장 결제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거래관계와 금융 상황에 따라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 등으로 구분한다.

other%20matters%20of%20taxation, (최종접속일: 2025.10.2).

119) 홍콩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ird.gov.hk/eng/welcome.htm>, (최종접속일: 2025.10.2).

120) Op. cit., 홍콩 수출입 일반 규정 웹사이트.

국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상업 송장과 유사하게 상품의 재료와 용도의 설명이 포함되는 문서,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함.

2) 외국 갤러리의 홍콩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① 관세 및 부가가치세¹²⁷⁾

홍콩은 자유무역 정책과 기본법 제108조의 낮은 세율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미술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VAT), 상품 및 서비스세 또는 일반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인세¹²⁸⁾

홍콩의 법인세(Profit Tax)는 홍콩 내에서 영위되는 무역, 직업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되는 과세 대상 이익에 부과된다. 표준 법인세율은 16.5%이며, 최초 2백만 홍콩 달러의 과세 대상 이익에 대해서는 8.2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법인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DTA)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홍콩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 법인은 일반적으로 홍콩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 이익이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가. 고정사업장

단순히 전시하는 행위와 적극적인 거래 행위를 구분하기 때문에 갤러리들이 홍콩에서 직접 판매 활동을 할 경우, 주로 법인세 및 사업자 등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아트페어에서 직접 판매 활동에 참여할 경우, 홍콩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27)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세금 시스템을 운용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이전에 홍콩이 추구했던 낮은 세율 정책을 참고하여, 세금의 종류, 세율, 세금 감면, 공제 및 면제, 기타 세금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을 자체적으로 제정한다." 참고: Op. cit., 홍콩 기본법 웹사이트-제108조.

128) Ibid.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갤러리는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홍콩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단기적인 사업 활동이라도 공식적인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연례 사업자 등록 수수료 납부와 같은 지속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나. 허용 가능한 활동의 예외

홍콩의 허용 가능한 방문객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예외 조항으로 “대중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아트 바젤 홍콩에서 단순히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는 고정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트페어나 전시회에서 대중에게 직접 판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갤러리들은 임시 아트페어 참여가 자동으로 고정사업장 고려 사항이나 사업자 등록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네트워킹이나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단순한 전시와는 달리, 직접 판매와 같은 상업적 활동의 정확한 성격과 범위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고정사업장이 설립되면, 해당 고정사업장에 직접 귀속되는 이익은 고정사업장이 별개의 독립적인 기업인 것처럼 과세한다.

다. 보호적 신고

갤러리들은 단순히 일회성 참가임에도 불구하고 홍콩 세무국(IRD)¹²⁹⁾이 고정사업장이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조약의 보호적 조항을 활용하기 위해 “보호적 신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호적 신고”는 홍콩 세무국(IRD)에 일단 신고는 하되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조세조약(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은 두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이 조약에는 특정 조건 하에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지 않는 보호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홍콩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

129) 홍콩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ird.gov.hk/eng/welcome.htm>, (최종접속일: 2025.10.2).

라. 사업자등록 및 준수 요건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국세청(IRD)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BRC)을 받아야 한다. 이 의무는 물리적 사업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 운영에도 적용된다. 홍콩에 사업장을 설립하는 외국 기업은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갤러리가 아트페어에서 고객에 직접 판매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번호(BRN)가 공식 납세자 식별번호(TIN) 역할을 한다. 개인의 경우 홍콩 신분증(HKID) 번호가 TIN으로 사용된다.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BIR-51 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법인세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회사가 특정 과세 연도 동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거래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0”으로 표시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0 신고”는 해당 기간 동안 홍콩 내외에서 어떠한 사업 활동도 수행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인 신고 마감일은 세금 신고서 발급일(일반적으로 4월 1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세무 대리인이 대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7. 일본

□ 간단히 보기

Step 1

아트페어 참여하기 전 체크리스트

- 일본의 전자 수출 허가 신청 시스템 NACCS (naccs.jp/)을 통해 직접 또는 운송사를 통해 수입 신고서를 제출한다. 수입자명,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 등 상세 정보를 적는다.
- 참여하는 임시 아트페어가 특별 세관 구역 내 소비세 유예 혜택 대상인지 확인한다.

Step 2

아트페어 기간 및 사후 판매 과정에서의 체크리스트

- 일본은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제도로 수입품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갤러리와 동일하게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는 외국 갤러리에게도 미술품 판매에 대해 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일본 국세청에서 특별 세관 구역을 지정하여 일본 내에서 열리는 임시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해외 갤러리에 미리 소비세를 내지 않고 판매 시에 내도록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일본의 “일시적” 거래와 “지속적” 거래 간의 법적 구별은 사업자 등록의 중요한 기준점이다. 사업자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상세히 이해하기

1) 외국 갤러리의 일본 내 미술품 반입 및 통관절차

① 일본 내 미술품 수입 통관: 특별 세관 구역¹³⁰⁾

일본의 세관 구역은 외국의 미술품을 즉시 수입 절차나 관세 및 세금 납부 없이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을 제공하며, 수입 절차 및 세금 납부는 이러한 작품이 판매되어 일본 내에서 인도될 때만 발생한다. 기존에는 판매 목적으로 미술품을 일본 내로 들여오는 경우 해외 갤러리는 일본 내에 미술품 수입 시 미리 소비세(consumption tax) 10%를 세관에 내고, 납부 증명을 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일본 국세청에서 ‘특별 세관 구역(Customs Area)’을 지정하여 일본 내에서 열리는 임시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해외 갤러리에 미리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② 일본 내 미술품 수입 통관을 위한 필수 서류¹³¹⁾

직접 또는 운송업체나 통관 대리인이 수입 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요구된다.

- 수입 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또는 ATA 까르네¹³²⁾): 통관 신고에 필요한 승인 문서. 전자 수출 허가 신청 시스템¹³³⁾을 통해 직접 제출하거나 운송사를 통해 제출. 수입자명,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¹³⁴⁾ 등 상세 정보 기재.
- 상업 송장/포장명세서(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 사전 통관절차를 위해 필요함. 작품명, 작가, 재질, 가격, 판매자 정보, 작품 원산지, HS Code 등을 상세 정보 기재
- 선하증권(Bill of Landing/Air Waybill): 상업 송장과 함께 외국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가 일관

130) 일본 관세청, International Auction and Art Fair in Customs Area, 2025. https://www.customs.go.jp/english/hozei_e.pdf

131) NACCS 웹사이트, <https://naccs.jp/>, (최종접속일: 2025.10.2).

132) 판매가 아닌 전시 목적의 반입을 위한 서류로 반입 작품에 대하여 재수출(재반출) 해야 하므로, ATA 까르네를 통해 미술품을 반입한 후,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미술품은 임시 수출 상태에서 영구 수출 상태로 전환하여 세무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33) Op. cit., NACCS 웹사이트.

134)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표준 코드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시스템이다. 주로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하고 관리하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 상품의 재료와 용도의 설명이 들어감.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¹³⁵⁾
- 보험 증서/포장 목록/화물 계정(Insurance Certificate/Packing List/Freight Account): 세관에서 요구 시 필요한 서류로 작품의 보험 증명, 작품 규격 및 재료, 운송비 내역을 기재하는 문서

2) 외국 갤러리의 일본 내 미술품 반입 및 판매에 대한 과세 제도

① 관세¹³⁶⁾

일본에 원본 미술품(판화, 인쇄물, 석판화에 대한 HS 코드 9702, 조각품/조상에 대한 HS 코드 9703로 분류)은 일반적으로 수입 시 무관세이다.

② 소비세

일본은 부가가치세와 유사하게 수입품에 대해 10%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일본에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갤러리와 동일하게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는 외국 갤러리에게도 미술품 판매에 대해 소비세가 부과된다. 갤러리 등 사업체는 과세 대상 매출액이 특정 “기준 기간”(일반적으로 2년 전 회계 연도) 또는 “특정 기간”(전 회계 연도 첫 6개월) 동안 1천만 엔을 넘거나, 자발적으로 “적격 송장 발행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비세 의무가 발생한다. 미술품 총 판매액의 10%를 소비세로 일본 국세청(NTA)에 일본 현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납부한다.

가. 소비세 유예 제도¹³⁷⁾¹³⁸⁾

중요한 최근 변화는 도쿄 겐다이 및 아트 콜라보레이션 교토와 같은 주요 아트페어에 보세 지위

135) 원산지 증빙은 수출국(한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음.

136) 일본관세청웹사이트-제97류예술품,수집품및골동품,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5_04_01/data/e_97.htm, (최종접속일: 2025.10.2).

137) Op. cit., 일본 관세청, International Auction and Art Fair in Customs Area, 2025.

138) Eileen Kinsella, “International Exhibitors at the Forthcoming Tokyo Gendai Art Fair Will Get a New Tax Perk”, *Artnet News*, June, 2023, <https://news.artnet.com/market/tokyo-gendai-tax-break-for-international-galleries-2316839>, (최종접속일: 2025.10.2).

가 부여됨에 따라 수입 미술품에 대한 10%의 소비세가 수입 시 선불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시점에만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세 유예 제도일 뿐, 법인세 및 고정사업장(PE)으로 분류될 위험성, 그리고 현지 세무 대리인 선임 의무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남아있다.

나. 적격 송장 시스템¹³⁹⁾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적격 송장 시스템(Qualified Invoice, QI)은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비슷하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보관해야 하는 것처럼 적격 송장이 그 역할을 한다. 판매자가 소비세 관련 제도로 복잡했던 매입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소비 세액 징수를 위해 도입되었다. 적격 송장을 발행하려면 일본 국세청(NTA)에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고유한 등록 번호를 받게 되며, 이 송장에는 거래 내용과 함께 등록 번호, 적용 세율, 세율별 소비 세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한 소비세(매입세)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적격 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단,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인 면세사업자는 적격 송장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③ 미술품 지속 거래 사업자의 등록 및 준수 요건¹⁴⁰⁾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수행하려는 외국 갤러리는 그러한 활동을 시작한 후 3주 이내에 일본 법무국에 설립 등록을 해야 하며, 일본 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등록은 외국 기업이 지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일본 내 대리인을 처음 지정할 때 발생한다.

가. 일시적/지속적 거래의 구분

일본의 “일시적” 거래와 “지속적” 거래 간의 법적 구별은 사업자 등록의 중요한 기준점이다. 단일의 단기 전시회는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아트페어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단순한 전시를 넘어선 판매 활동을 구축하는 것은 공식적인 외국 기업 등록 요건을 유발할 수

139) 일본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nta.go.jp/english/index.htm>, (최종접속일: 2025.10.2).

140) 일본 법무성 웹사이트-외국 기업 등록, https://www.moj.go.jp/EN/MINJI/m_minji07_00002.html, (최종접속일: 2025.10.2).

있다. 반복적인 참여와 직접 판매 목적이라면 외국 기업으로서의 공식 등록 및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설정 비용과 지속적인 준수 의무를 수반하므로, 시장 진입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사업자 등록 및 소비세 신고

일본에 등록된 기업은 일본 국세청(NTA)으로부터 13자리 법인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기업의 주요 납세자 식별번호 역할을 하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일본에서 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 기업은 세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 대리인은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담당한다.

소비세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제출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년도 세금 부담액에 따라 중간신고도 요구될 수 있다.

법인세 신고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홍콩 및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회사가 이익이 없더라도 “0”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준비를 위한
유의 사항

해외 아트페어 준비 과정¹⁴¹⁾

Q 해외 아트페어를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규모가 큰 국제 아트페어일수록 준비 과정에 대한 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아트페어 준비위원회의 안내와 리마인더를 꼼꼼히 따른다면, 큰 어려움 없이 참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트페어의 심의에 선정되어 참여가 결정되면, 해당 아트페어 준비위원회로부터 담당자가 바로 지정되고, 그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주어진 데드라인을 지키면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단, 주어진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에 몰두한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아트페어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준비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지) 운송업체 파업이나 작품 운송 과정 중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변화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여유 기간을 잡고 다양한 운송 루트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운송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Q 해외 아트페어를 위해 작품 및 부스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트페어가 시작하기 최소 6개월 전부터 참여 작가들과 운송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의 경우, 작품을 우선 한국으로 배송하여 부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작품의 완성 기한, 국내 운송 기간, 다시 아트페어 현지 운송 기간 등 그 모든 기간을 고려하여 작가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실무적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관세입니다. 관세를 비롯하여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렵습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준비의 마지막까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141) 국내 주요 갤러리 그리고 운송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관세는 작품이 현지 국경을 넘어가는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갤러리가 지불해야 하는 관세, 구매자가 작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세, 이에 더해 해외 갤러리가 현지에서 판매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도 있어 갤러리는 판매 세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아트페어가 개최되는 국가별 미술품 관세 상황에 대해 미리 확인해야 하며, 이때 운송사 또는 아트페어 담당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트페어 담당자와 현지 운송사들로부터 얻은 정보의 신뢰도가 가장 높기는 하지만, 수집한 정보에 대해 직접 중복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세금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같이 입국 시 발생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지역(Free Port) 지역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를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추가로, 부스에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에디션이 있는 가구를 한국에서 외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판매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Q 해외 아트페어를 준비하며 운송사 섭외의 중요성과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A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많은 갤러리들이 경험이 많은 운송사를 선호하는데, 이는 경험이 많은 운송사일수록 많은 현지 파트너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 발생 시 대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량 있는 운송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러한 현지 대응력을 통해 결국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들이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아트페어 3개월 전 운송사별 견적서를 비교하여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책정액의 기준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격 비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는 300kg을 기준으로 견적을 제시하고, B사는 200kg을 기준으로 견적을 제시한 경우, 가격만 비교하여 갤러리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Q 해외 아트페어에서 작품 판매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금액에 포함되는 운송비, 세금 관련 목록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작품 판매 금액에 발생하는 세금 내역을 포함하여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 채 가격을 책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판매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과 현지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수기 인보이스를 작성하거나, 고객과의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아 하루 늦게 소통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모든 서류와 장비를 현지로 준비해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민에게 판매된 매출 건에 대해 판매자인 갤러리가 sales tax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작품 구매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세금이 달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세무 대리인 섭외 및 고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참여하는 아트페어에서 현지 법무 대리인을 지정 및 리스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 아트페어 사무국에 문의하여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본인의 회사 또는 개인 회계사를 대리로 세워 작품 판매 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비용 절감을 위해 타 갤러리와 부스 공유(share)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 비용 절감을 위해 갤러리 간 부스를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음을 미리 알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트페어가 개최되는 지역의 현지 갤러리와 부스를 공유하는 경우, 파트너 갤러리의 현지 네트워크 및 정보를 통해 아트페어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스를 공유함으로써 고객이나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갤러리 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한국

곽혜영, 박영택, 서진수, 이홍길, 임상혁, 조숙현(2019). 화랑 운영 및 미술품 유통 가이드북. 한국화랑협회.
 김홍기(2024). 『자본시장법[제2판]』, 박영사.
 문화체육관광부(2019). 예술품 및 화랑 관련 세제개선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 법무법인 세종(편).
 문화체육관광부(2016).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문화체육관광부(2017).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용역 보고서. 율촌 연구용역팀.
 법무법인(유) 화우(2023). 로펌번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 박영사.
 삼일회계법인(2025). 미술품 투자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 Samil PwC.
 허원제(2022). 미술품에 대한 취득세 과세 타당성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FTA 통합 플랫폼 사이트, <https://okfta.kita.net/hsCode?mnSn=207>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사이트,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lId=010000000000120477>

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3), “3550-079A Ultimate Consignee at Time of Entry Release”.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3550_079a_3.pd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16), “CBP Form 3461 Instructions”.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6-Jun/CBP%203461%20Instructions_0.pd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5), “Entry Summary”.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2025-07/CBP_Form_7501.pdf
 US IRS (2023).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
<https://www.irs.gov/pub/irs-pdf/f8300.pdf>

뉴욕주 재무부 웹사이트 - 판매세 및 사용세:

<https://www.nyc.gov/site/finance/business/business-nys-sales-tax.page>

미국 국무부 문화유산센터 웹사이트: <https://eca.state.gov/cultural-heritage-center>

미국 관세법 홈페이지 - 제19편 Title 19; 통합관세율표(HTS) 제97장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https://hts.usitc.gov/>

미국 IRS 웹사이트 - 고용주 식별번호 발급: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get-an-employer-identification-number>

미국 IRS 웹사이트 -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https://www.irs.gov/tin/taxpayer-identification-numbers-tin>
미국 IRS 웹사이트 - Form 8300 및 1만 달러 초과 현금 지급 신고: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orm-8300-and-reporting-cash-payments-of-over-10000>
미국 뉴욕주 웹사이트 - 비즈니스 익스프레스: <https://www.businessexpress.ny.gov/>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
<https://www.cbp.gov/trade/programs-administration/entry-summary/ata-carnet-faqs#:~:text=The%20ATA%20Carnet%20is%20an,added%20taxes%20on%20the%20goods>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 - 최소과세면제 규정:
<https://www.cbp.gov/trade/trade-enforcement/tftea/section-321-programs>
미국 연방규정집 웹사이트 - 간이 통관 대상 물품: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43/subpart-C/section-143.21>
미국 의회 웹사이트 - 2020년 자금세탁방지법(AML) 이행과 그 후: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R47255>
미국 의회 웹사이트 - 미술 시장 투명성 법안: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2400/text>
일리노이주 세무국 웹사이트: <https://mytax.illinois.gov>
캘리포니아주 세무국 웹사이트: <https://cdtfa.ca.gov/>
캘리포니아주 세무국 웹사이트 - 판매세 및 사용세:
<https://cdtfa.ca.gov/lawguides/vol1/sutr/sales-and-use-tax-regulations-art4-all.html>
플로리다주 세무국 웹사이트: <https://floridarevenue.com/Pages/default.aspx>
Avalara 웹사이트 - 시카고주 판매세:
<https://www.avalara.com/taxrates/en/state-rates/illinois/cities/chicago.html>

프랑스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총국/금융정보분석원 (2020), “예술품과 골동품 시장의 거래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관련 법적 의무”. <https://www.douane.gouv.fr/sites/default/files/2023-03/21/lignes-directrices-lcb-ft-pour-les-marchands-d-art-et-d-antiquite.pdf>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총국 (2025), “세관의 감독을 받는 전문 종사자에 의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LCB-FT) 제도의 이행”.
<https://www.douane.gouv.fr/sites/default/files/2025-05/23/M%C3%A9mo-LCB-FT.pdf>

관세 및 간접세 총국 웹사이트 - 관세청(DGDDI) 지침:

<https://www.douane.gouv.fr/french-customs-information-available-english>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 웹사이트 - EORI 번호:
<https://business.gov.nl/international/doing-business-abroad/eori-number-for-all-customs-operations/>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웹사이트 - 일시 수입 제도:
<https://www.douane.gouv.fr/fiche/regime-particulier-ladmission-temporaire>
프랑스 관세 및 간접세 총국 웹사이트: <https://www.douane.gouv.fr/>
프랑스 관세법 웹사이트 - 제169조부터 제174조 및 EU 관세법의 관련 조항: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1570/LEGISCTA000006122082/
프랑스 관세법 웹사이트 - 통화 및 금융법전 관련 조항: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20196698>
프랑스 국세청 공식 세무 공보 웹사이트 - 예술품 부가가치세(VAT):
<https://bofip.impots.gouv.fr/bofip/1292-PGP.html/identifiant%3DBOI-TVA-SECT-90-60-20250514>
프랑스 조세 웹사이트 - 외국 기업 부가가치세 등록 관련:
<https://www.impots.gouv.fr/do-foreign-companies-have-register-vat>
프랑스 조세 웹사이트 - 프랑스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을 위한 관할 기관:
<https://www.impots.gouv.fr/contact-professionnel-siee-et-sr-tva>
Art Régie Transport 웹사이트 - 수입 시 세관 및 조세 절차:
<https://www.artregietransport.com/gestion-des-formalites/formalites-douane-fiscalite-importation/>
EU 웹사이트 - 세관 규정: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union-customs-code-ucc-introduction_en
EU 웹사이트 - 통관 관련 규정: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international-affairs/origin-goods/non-preferential-rules-origin_en
EU 웹사이트 - EORI 번호: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customs-operations/economic-operators-registration-and-identification-number-eori_en
EU 이사회 웹사이트 - EU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정책:
<https://www.consilium.europa.eu/fr/policies/fight-against-terrorist-financing/>

영국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 - 세관 신고 서비스 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ustoms-declaration-service>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 - 수입 부가가치세,

<https://www.gov.uk/guidance/check-when-you-can-account-for-import-vat-on-your-vat-return>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 - 일시 반입 제도: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response-bringing-goods-into-the-uk-temporarily/government-response-to-temporary-admission-call-for-evidence>

영국 관세청 웹사이트 - 일시적 물품 수입 신청 지침:

<https://www.gov.uk/guidance/apply-to-import-goods-temporarily-to-the-uk-or-eu>

영국 국세청 국제 메뉴얼 웹사이트: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281010>

영국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영국 고액 미술 거래 및 미술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제 지침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igh-value-dealers-art-market-participants-guidance/financial-sanctions-guidance-for-high-value-dealers-art-market-participants>

영국 사업체 지침 웹사이트 - 마진 제도:

<https://www.gov.uk/guidance/the-margin-and-global-accounting-scheme-vat-notice-718>, <https://www.gov.uk/vat-margin-schemes>

영국 자금세탁방지 규제 웹사이트: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economic-crime-supervision-handbook/ecsh21500>

영국 통합 온라인 관세 웹사이트:

<https://www.trade-tariff.service.gov.uk/headings/9701>

영국-대한민국 이중과세방지협정(DTC) 웹사이트:

<https://www.legislation.gov.uk/uksi/1996/3168/made>

Alinea Customs 웹사이트: <https://alineacustoms.com/art-and-customs/>

Taric Support 웹사이트: <https://www.taricsupport.com/nomenclature/en/9700000000.html>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Dhruva Consultants. (2021). "Article 7, Mandatory Legislation", VAT Handbook, A compilation of UAE VAT Legislation, p. 46.

<https://dhruvaconsultants.com/wp-content/uploads/2025/07/WTS-Dhruva-VAT-Handbook-UAE.pdf>

경제지표 웹사이트 - 아랍에미리트, 법인 세율: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arab-emirates/corporate-tax-rate>

아랍에미리트 법령 웹사이트 - 예술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법령:

<https://uaelegislation.gov.ae/en/legislations/2708>

아부다비 통관 웹사이트: www.adcustoms.gov.ae

월드 아트 아부다비 웹사이트 - 아랍에미리트 미술법의 새 시대 개막:

<https://worldartdubai.com/a-new-era-for-art-law-in-the-uae>

제약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 - 아랍에미리트 통관 및 운송: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5&rowCnt=10&menuId=MENU01805&maxIndex=00473994579998&minIndex=0047399347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linkId=47399393>

Abu Dhabi Art 2025 웹사이트 - 참가 조건 및 규정: <https://fama.abudhabiart.ae/en/terms-and-conditions>

Mirr Asia 웹사이트 - 아부다비 회사 설립: <https://www.mirrasia.com/abu-dhabi>

UAE 경제관광부 웹사이트 - UAE 회사 설립:

<https://www.moet.gov.ae/en/establishing-companies>

UAE 관세청 웹사이트 - 고가 품목 및 현금 신고: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finance-and-investment/clearing-the-customs-and-paying-customs-duty>

UAE 연방세무청 웹사이트: <https://tax.gov.ae/ar/default.aspx>

UAE 연방세무청 EmaraTax 웹사이트: <https://eservices.tax.gov.ae/#/Logon>

UAE 정부 웹사이트 - 부가가치세: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finance-and-investment/taxation/vat/valueaddedtaxvat>

UAE 통관신고 웹사이트: <https://declare.customs.ae/login>

홍콩

홍콩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ird.gov.hk/eng/welcome.htm>

홍콩 기본법 웹사이트 - 제108조:

<https://www.fstb.gov.hk/tb/en/business/general/policies-principles-of-general-revenue.htm#:~:text=Article%20108%3A&text=The%20Hong%20Kong%20Special%20Administrative%20Region%20shall%2C%20taking%20the%20low,and%20other%20matters%20of%20taxation>

홍콩 수출입 일반 규정 웹사이트: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60A>

Brio 웹사이트: <https://www.brio.com.hk/>

GE-TS 웹사이트: <https://www.ge-ts.com.hk/cloud/zh/>

Tradelink 웹사이트: <https://www.tradelink.com.hk/en/>

일본

일본 관세청(2025). “International Auction and Art Fair in Customs Area,”
https://www.customs.go.jp/english/hozei_e.pdf

Kinsella, E. (2023.06). “International Exhibitors at the Forthcoming Tokyo Gendai Art Fair Will Get a New Tax Perk”, Artnet News.
<https://news.artnet.com/market/tokyo-gendai-tax-break-for-international-galleries-2316839>

일본 관세청 웹사이트 - 제97류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5_04_01/data/e_97.htm

일본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nta.go.jp/english/index.htm>

일본 법무성 웹사이트 - 외국 기업 등록:
https://www.moj.go.jp/EN/MINJI/m_minji07_00002.html, 2025년 10월 2일 방문.

NACCS 웹사이트: <https://naccs.jp/>

한국 미술품의 해외 판매 관련 세금 제도 및 신고 절차 안내서

발행일	2025. 12. 12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	시각예술본부 본부장 김승연 시각해외진출팀 팀장 윤지영 시각해외진출팀 주임 추명지
연구진	주저자 캐슬린 김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김혜은 (법무법인 신원 파트너 변호사)
연구총괄	신혜선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
연구지원	윤예지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협동과정 석사과정) 서혜정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문의	Tel. 02-708-2909 Fax. 02-708-2242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습니다.

